

용기의 대소형태에 대해서는 명확한 한정은 없지만 우선 화염병은 운반이 용이하고 또한 공격대상을 향해서 신속 용이하게 던질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혼자서 운반 또는 투척 가능한 정도의 크기의 용기로 해석해야 하며, 「그 물질이 유출하거나 비산하는 경우」라는 요건과의 관계에서 내용물이 유출 또는 비산할 수 있는 형상, 재질의 용기인 것을 필요로 한다.

- 「휘발유·등유·기타 불붙기 쉬운 물질」
휘발유·등유 외에 아세톤, 솔벤트나프타(신나), 에칠알콜, 이황화탄소, 에셀벤젠 등과 같이 휘발성을 갖고 용이하게 인화하여 급속히 연소하는 물질을 말한다.
- 「불붙기」
휘발성 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증기가 도화선에 의하여 연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 「발화장치」
불붙기 쉬운 물질에 인화시켜서 연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도화선을 스스로 작동시키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불을 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치를 포함한다.
- 「점화장치」
불붙기 쉬운 물질에 인화시켜서 연소하는데 필요한 도화선을 스스로 발화하는 것이 아니고 점화에 의해서만 발화하는 장치를 말하며 예를 들면 슝, 천, 종이 등을 이용한 장치가 여기에 해당한다.
- 「그 물질이 유출하거나 비산하는 경우에 이것을 연소시키기 위한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를 한 물건」 유리병 등의 용기에 들어있는 휘발유, 등유, 기타 불붙기 쉬운 물질이 유출 또는 비산하는 경우, 여기에 인화시켜서 연소시키기 위한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가 당해 용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데 사용되는 것」
사회통념상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입히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그 물질의 구조, 형상, 기능, 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화염병과 유사한 구조와 형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본 조에서 말하는 화염병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예컨대, 라이타).

第3條 (火焰瓶의 使用)

- 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해설】

- 보호법익은 화염병을 사용하는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동시에 행위 객체인 자연인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한 보호법익에 포함된다고 본다.
-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란
사상 또는 재산의 소훼, 손괴라는 결과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발생의 위험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위험범이다. 위험의 정도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구체적위험범이다. 예컨대 진압부대를 향하여 화염병을 던져 연소하였으나 부대원이 모두 피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파출소를 향하여 투척하였는데 파출소 바로 앞에 떨어져 연소함으로써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경우 등
- 「행위」: 사용
사용이란 화염병을 던지거나 굴리거나 화염병을 이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발생케 하는 행위로서 불붙기 쉬운 물질을 유출 또는 비산시켜서 연소하려는 듯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연소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발화장치를 갖춘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점화장치를 갖춘 화염병에 점화하여 투척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점화장치를 갖춘 화염병의 경우 점화장치에 점화만을 한 단계에서는 아직 사용의 실행의 착수라고 할 수 없고 점화하여 투척행위가 있을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고의」: 주관적 요건

화염병을 사용한다는 인식 외에 화염병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야기할 소지(일반적 가능성)가 있다는 인식까지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본 조 제2항의 미수죄는 사용 그 자체가 미수로 끝난 경우(착수미수)와 사용은 하였지만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실행미수)를 포함한 것이다.

[관련판례]

< 대법원 1992. 3. 31. 1991도 3279 >

- 판시사항

시위에 참가하여 돌맹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화염병 투척을 용이하게 한 경우 화염병 투척(사용)의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화염병과 돌맹이들을 진압 경찰관을 향하여 무차별 던지는 시위 현장에 피고인도 이에 적극 참여하여 판시와 같이 돌맹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화염병 투척을 용이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 자신이 직접 화염병 투척의 행위는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화염병 투척(사용)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第4條 (火焰瓶의 製作·所持 等)

①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운반·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화염병의 제조에 제공할 목적으로 유리병·기타의 용기에 휘발유·등유·기타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운반·소지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화염병의 제조에 제공할 목적으로 화염병 사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작이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운반·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 본 조는 화염병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침해 및 위험을 끼치는 것에 비추어 이를 효과적으로 억지하고, 중대한 법익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의 예비적 단계에 해당하는 제조 및 보관, 운반, 소지를 처벌함과 동시에, 화염병의 제조에 제공할 목적으로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만 하면 화염병이 되는 이른바 화염병의 半成品을 보관, 운반, 소지하는 경우 등도 처벌의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 「행위」: 제조, 보관, 운반, 소지

· 제조란

유리병 등에 휘발유, 등유, 신나 등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어 점화 또는 발화장치를 하여 화염병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서 이에는 가공, 변형 및 수리도 포함하며 이미 불붙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용기에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도 여기에서 말하는 제조에 해당한다.

· 보관이란

위탁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화염병 등을 은닉하는 행위로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범위 내에 두는 것을 말하며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화염병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였다가 그 후 그 정을 알고 나서도 보관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보관에 해당한다.

- 운반이란

화염병 등을 장소적으로 이전함을 말한다.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장소적으로 이전한 이상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더라도 운반죄가 성립한다. 또 운반은 스스로 함을 요하지 않으며 예컨대 화염병을 화물차에 적재하고 차량에 동승하여 동행하는 것도 운반에 해당하며 화염병인 정을 모르는 타인으로 하여금 운반케 하는 경우에는 본 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소지란

화염병 등을 현실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경우로 금방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화염병의 제조에 제공할 목적」

본 조 제2항 3항은 목적범인데 여기에 목적은 행위자 스스로가 제조용으로 제공할 목적인가, 타인의 제조용으로 제공할 목적인가를 묻지 않는다. 더욱이 타인의 제조용으로 제공할 목적의 경우에는 그 타인이 제조 의사를 갖고 있는지 어떤지, 제조에 종사함이 확실한지 어떤지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第2編

保 安

第1章 保安警察

第1節 序說

1. 國家安全保障의 意義

오늘날 안전의 문제가 -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국제적이든 - 인류가 처한 문제들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중에서도 국가의 안전이 특히 중요시되는데, 이는 국가안전보장이 다른 두 수준 - 개인적 안전과 국제적 안전에서의 안전에 관련된 조건들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각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국가든 서로의 존재로 인하여 서로의 안전을 위협받곤 하였다. 일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취한 군사적 또는 경제적 조치들이 타국의 그것들과 상충되어 경제적 혼란과 전쟁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문제의 강도나 성격들은 시대상황에 따라 급변한다.

즉, 19세기부터 20세기 2차대전 후의 냉전구도 하의 각국은 대치, 대결적 양상을 띠었으나 1980년대 말 동구공산권과 소련의 몰락과정을 겪으면서 긴장이 완화되고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종전의 문제들이 언제 수면위로 다시 떠오를 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2. 保安警察의 意義

보안경찰이란 국가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활동 및 모든 반국가활동 세력에 대비하는 국가적 대공취약점에 대한 첩보수집과 분석 및 판단, 보안사범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을 말한다.

많은 세계 각국에서도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업무가 경찰기능의 일부로서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탈냉전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적시한다면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리 보안경찰의 역할은 강조되어 마땅하다.

第2節 職務範圍

보안경찰의 존재가치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있으므로 보안경찰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는 즉, 기본적 인권의 존중,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자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전복시키려는 세력으로부터의 보호에 있다할 것이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가장 중핵적인 안전보장기관은 대통령직속의 국가정보원이다. 이는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수립 등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보안 부서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들 중에는 간첩은 중요 방첩공작수사, 좌익 사범수사, 반국가적 불온유인물 수집 및 분석, 보안관찰, 남북교류관련업무 등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안경찰의 직무범위⁸⁾는 다음과 같다.

- ① 보안관찰 업무
- ②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 ③ 불온유인물의 수집 및 분석
- ④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⑤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업무
- ⑥ 간첩 등 중요 방첩수사
- ⑦ 중요 좌익사범의 수사

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 제15조

第3節 特徵

보안경찰도 경찰인 점에서는 일반경찰과 동일한 목적과 사명을 갖는다. 다만 상대적으로 그 차원의 정도와 가치의 비중에 있어서 일반경찰과 구별되는 보안경찰의 특징이 있다.

1. 性質上 特徵

가. 보안경찰의 목적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다

일반경찰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제1차적 목적이라 한다면, 보안경찰의 경우 제1차적 목적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있다.

나. 보안경찰의 활동은 사전·예방적 성격을 갖는다

일반경찰의 경우 사전예방적 활동은 물론 사후진압적 활동까지도 활동지침으로 삼아야 하나, 보안경찰의 경우 그 추구하는 목표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있으므로 사후진압적 활동으로는 이미 보안경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다. 보안경찰은 위태성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경찰의 경우 그 대상범죄가 침해적 성질을 갖는 범죄인데 반해, 보안경찰의 경우 사전예방적 활동이 그 기초이므로 범의이 현실적으로 침해됨을 요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삼을 가치가 없게 된다.

라. 보안경찰의 활동에 있어서 보호법익은 국가적 법익으로 한다.

일반경찰의 경우 개인적 법익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보안경찰은 국가적 법익으로 활동하고 있다.

2. 手段上 特徵

보안경찰의 성질상 특징을 실현하기 위하여 방편적으로 취할 수 밖에 없는 보안경찰의 활동상 특징이 있다.

가. 비공개성

보안경찰은 그 활동수단이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보안요원의 행동은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비노출성

일반경찰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신분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며, 효과적인데 반해 보안요원은 그 업무수행의 성질상 전혀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第2章 國家保安法

第1節 總論

1. 國家保安法의 本質

가. 보호법익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은 국가존립의 기초 그 자체, 즉, 국가안전보장(National Security)이다. 국가안전보장이란 그 개념의 정의가 다양하지만, 한마디로 표현해서 국가존립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나아가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보안법은 이것을 직접목적으로 하며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다른 안보관계 법률에 대한 특질이 있다.

따라서 보호법익의 본질 면에서 보면, 국가보안법은 형법의 내란의 죄·외환의 죄 등과 같이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형벌법규에 해당된다.

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 요지

(가) 남북한간의 왕래·교역·협력사업과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동 법률을 적용함(제3조).

(나) 남북한을 왕래하고자 하는 남북한의 주민은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등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 남북한간에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거나 협력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9조, 제13조, 제16조).

(다) 증명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남북한을 왕래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7조 제1항).

(2) 국가보안법과의 법리문제

- (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중 왕래 등 교류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잠입·탈출)에 물품거래는 동법 제5조 제2항(금품수수)에, 북한주민과의 회합·통신은 동법 제8조(회합·통신)에 각 저촉될 수 있음.
- (나) 위 두 법간의 적용기준은 특별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성이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바, 이는 결국 “국가의 안전·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귀착된다고 해석됨.
- (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남북한 왕래·물품거래 등 행위라 하더라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 하에 정당성이 없이 한 행위일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와 반면, 그 주관적 요건이 구증되지 않고 단순히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남북을 왕래하거나 승인없이 회합·통신, 금품 수수한 사실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함.
- (라) 위와 같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금품수수, 회합·통신 등의 수사에 있어서의 그 행위가 국가에 안전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거나 동 행위에 정을 알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여 그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양 법률의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마) 또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금품수수, 회합·통신 죄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반 국가단체 구성·가입제 간첩 등 목적수행죄 찬양·고무죄 등 여타 조항과는 법리상으로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을 유의할 것.

다. 국가보안법의 법적 성격

- (1) 공법(公法)
- (2) 형사사법법(刑事司法法)
- (3) 國家的 法益을 保護하는 法
- (4) 實體法과 節次法이 병합된 特別法

2. 國家保安法의 目的⁹⁾

대체로 법률에서 목적규정을 두는 의의는 그 법률의 입법취지를 밝힘으로써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기준삼게 하려는데 있다.

본 조에 의한 목적요소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국민의 자유이다. 그런데 이 삼자는 가치관의 면에서 상호 충돌할 염려가 없는 바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나라의 현실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존권 그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면 궁극적으로는 자유권이 지켜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그 규범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이 잘 조화될 수 있는 점에서 최선의 기준을 찾아야 할 것이고 결코 그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고 다른 것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현행 국가보안법은 제1조 2항을 신설하여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동법 해석 적용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선언하였다

3. 國家保安法의 特性

가. 범죄에 있어서의 특성

(1) 고의범

국가보안법에 있어서는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입법에는

9) 國家保安法 第1條 第1項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많이 있으며,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군사기밀보호법에서는 과실범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¹⁰⁾

(2) 예비·음모의 확장¹¹⁾

예비·음모에 대하여는 범죄의 중대성, 즉, 반사회성이 특히 중대한 경우에만 범죄로써 처벌하는 것이 일반 형법의 입장이다.

(3) 범죄의 선동·선전 및 권유¹²⁾

근대에 대륙법계 형법이론에 의하면 범죄의 선전 및 권유는 공범이론에 있어서의 교사 또는 방조로써 논의되고 그 수단방법으로서 취급되어 정범의 행위가 있을 때에만 범죄로서 형법에 처벌이 되어 있다. 그러나 점차 국가 또는 사회생활이 복잡하여지고 이와 더불어 범죄도 지능화하여 특히 조직화됨에 따라서 범죄의 선동·선전 및 권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반사회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4) 범죄불고지의 형사책임

범죄불고지에 대하여는 근대형법에 이념으로는 일반적으로 이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가 반국가적 범죄 즉,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그것이 국가에 대한 반역적 성질 때문에 전 국민이 단합으로써 방지하여야 하고 또 발생된 범죄에 대하여는 즉시 포착하여 그에 전파적 영향을 중지시켜야 하며, 나아가서 전체 국민에게 반국가적 범죄인 반국가단체구성 등(법 제3조), 목적수행(법 제4조), 자진지원(제5조 1항)에 대한 각성과 인식을 고취시켜야 하므로 국가보안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전 국민에게 범죄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총력안보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한 법적 보장조치라고 할 수 있다.

- 10) 軍事機密保護法 第14條 “과실로 인하여 제13조제1항(업무상누설)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1) 국가보안법에서는 그 모든 범죄가 국가안보와 직결되므로 불고지죄, 무고날조죄, 특수직무유기죄, 반국가단체가입권유죄, 찬양·고무·동조죄, 허위사실 유포죄, 이적표현물 소지 등 죄, 회합·통신죄를 제외한 범죄에 관하여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 12) 國家保安法 第4條第1項6號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형법에 있어서의 특성

(1) 자격정지의 부과¹³⁾

국가보안법 위반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재범자의 특수 가중¹⁴⁾

국가보안법 기타 일정한 반국가적 범죄로써 판결이 확정된 자가 재차 특정한 범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최고형을 사형으로 정하고 있다.

(3) 몰수·추징 및 압수물의 특별처분

국가보안법 제15조에는 몰수, 추징 및 국고 귀속조치에 관하여 형법에 대한 특례법으로써 본 법의 범인이 범행의 보수를 받았을 때에는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 불능 시에는 상당가액을 추징토록 하였으며, 불기소처분(공소보류 포함) 시에도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형의 특별감면¹⁵⁾

국가보안법에서는 범죄에 대한 고도의 예방적 필요에 의하여 특별한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해당 법인이 다른 범인을 고발하였을 때와 타인의 범행을 방해하였을 때를 법률상 감면사유로 하였고 더욱이 자수에 대하여는 형법보다 경한 감면으로 하여 모든 법률상 감면은 필요적인 것으로 하였으며 특히 예비 음모범의 자수에 대하여는 필요적 면제사유로 하여 반국가적 범죄에 대한 반성과 대한민국을 위한 충성에 대한 실용과 국가에 대한 위협의 사전방지로써 형법보다도 관대한 은전을 규정하고 있다.

- 13) 國家保安法 第14條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14) 國家保安法 第13條(特殊加重)
- 15) 國家保安法 第16條(刑의 減免)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第2節 各論

1. 反國家團體의 意義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② 삭제

가. 反國家團體 概念(要件)

(1) 目的

(가) 정부참칭¹⁶⁾

(나) 국가변란¹⁷⁾

(2) 체계 : 지휘통솔체계

나. 反國家團體로 認定된 事例

(1) 목적성 : 정부참칭, 국가변란

(가) 대한민국 영토 강점

“현 군사분계선 이북의 대한민국의 영토를 강점하여 대한민국의 통치권의 행사 방해”¹⁸⁾

(나) 사회주의 국가 건설

“소위 민족민주혁명을 이루어 민중공화국을 수립한 후 반동관료, 독점재벌

16)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자기 멋대로 정부를 만들어서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국기, 국호사용, 헌법 등)

17)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합법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다수설 : 정부는 행정·입법·사법부를 지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전혀 다른 이념의 국가를 만드는 것(소수설 : 공산국가·군주국가 등을 지칭)

18) 대법원 '91. 2. 8. 북한공산집단

등을 숙청하고 토지·기타 생산수단을 몰수, 국유화하는 사회주의혁명을 이루어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¹⁹⁾

(다) 대한민국 체제 및 정부 전복, 민족자주정권 수립

“북한의 주체사상을 그 이념으로 하여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통일의 전위 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의 강령과 지도노선에 따라 결정적 시기에 민중봉기를 유발하여 헌법이 상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헌정권을 타도하고 외세를 축출한 후 민중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 다음 연방제로 남북통일”²⁰⁾

(라) 민주주의민중공화국 수립, 연방제 통일 달성

“현정부를 타도하여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의회주의적, 점진적 교체 방식으로는 그 타도가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그 타도의 방법론으로서 노동자·농민·도시 소자산가 등 모든 민중이 단결하여 무장봉기에 의한 임시혁명정부의 구성을 제시하면서 군대 및 경찰의 해체와 혁명군 창설, 자본몰수와 국유화를 통한 민중적 민족경제의 수립 등을 이루어 공산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민중공화국을 수립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 달성”²¹⁾

(2) 단체성(지휘통솔체계) : 전국적 규모의 지하조직

“노동자계급의 전위정당임을 표방하면서 조직원들을 훈련시키고 엄격한 자격 심사를 통해 조직원들을 선별하였으며,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중앙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상임을 담당하는 상임중앙위원회를 두고 중앙위원회 산하에 정책분과위원회, 조직위원회를 설치함과 동시에 각 위원회 및 전국에 각 조직편제를 두고 이에 따라 의사결정 및 지시와 그 집행 및 보고가 이루어지는 전국적인 조직과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정당·학원·노동·종교단체 등에 조직원들을 은밀히 투입시켜 거점을 확보하는 등”²²⁾

다. 構成要件

(1) 주체 : 내, 외국인 불문

19) 대법원 '92. 4. 24. 사노맹 사건

20) 대법원 '91. 11. 22. 자주민주통일그룹 사건

21) 대법원 '92. 7. 24. 혁명의 불꽃 사건

22) 대법원 '92. 4. 24. 사노맹 사건

(2) 행위

(가) 구성 : 2인 이상의 사람이 의사합치에 의하여 단체를 창설하는 것.

(나) 가입

- ① 기존의 반국가단체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는 것.
- ② 서면에 의하든, 구두에 의하든, 어떤 형식으로든 가입 의사 표시가 있고 단체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성립한다.

(다) 가입권유

- ① 권유의 수단, 방법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
- ② 다만 권유의 대상인 타인은 특정되어야 한다.

라. 主觀的 要件

- (1) 반국가단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 (2) '강요된 행위'는 별할 수 없다.
예) 어로작업 중 납북되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 하에서 본죄를 범한 경우

2. 目的遂行罪 中 間諜罪(第4條 第①項 第2號 前端)

제4조 (목적 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 제99조, 제250조 제2항, 제389조 또는 제340조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하거나 공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 이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 間諜罪

(1) 주체

(가) 반국가단체 구성원 : 수괴, 간부 등 지도적 임무 종사자, 일반 조직원 등

(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 : 군사기밀의 탐지, 수집을 내용으로 하는 지령을 받은 자 이어야 한다. 만일 지령내용이 단순히 동지포섭이나 지하당 구축 등에 관한 경우는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목적 수행 : 반국가단체 목적, 그 구성원 목적,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이면 모두 해당한다.

※ 간첩죄(형법 제98조)와 구별 : 적국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반국가단체를 위한 행위이고 그 주체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인 점에서 구분된다.

(2) 객체 : 군사기밀(국가기밀)

(가)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알리지 않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을 말한다(기존 판례).

(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²³⁾

(다) 기밀로 인정된 사례

- ① 각지의 지형 : 휴전선 부근 지리 상황
- ② 주요기관 시설의 위치, 기능 및 현황 : 군부대 촬영사진 필름, 군사 시설 보호구역 현황, 청와대 동정 및 시설

23) '97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③ 중요제도 : 병역제도
- ④ 주요 경제현황 : 포항제철 규모
- ⑤ 좌익, 재야운동권 동향 : 집회, 시위

(라) 기밀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 ① 국가에서 오히려 홍보하고 있는 사항 : 대전 엑스포 '93
- ② 순수한 학술적 사항 : '탈춤의 역사와 원리' 서적
- ③ 자신의 단순한 활동사항 : 포섭대상자를 계속 접촉, 대상자를 요해(了解) 중인 경우
- ④ 가족, 친척의 동정 및 소식 : 친척들의 생사여부를 조사하여 형제간에 알려준 행위

(3) 행위

(가) 탐지 : 무형의 사실 또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득하는 것을 말한다(목적, 확인, 관찰, 도청, 촬영, 복사, 녹취, 대화 등).²⁴⁾

(나) 수집 : 유형적 자료, 즉, 유형의 문서, 도화, 물건 등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적 인식요건

(가) '간첩 행위에 대한 사실인식'과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한다.

(나) 따라서 간첩의 지령을 받았다 하여도 그 지령받은 사항을 실천할 의사가 없었다면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4) 예를들면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간첩지령을 받고 입국한 자가 입국절차시 출입국 검사관의 책상 위에 있는 당국의 수배자 명단을 발견하고 이를 유심히 살핀 결과,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특정수배자를 알아낸 행위

3. 國家機密 探知·蒐集·漏泄·傳達·仲介(第4條 第①項 第2 號後段)

제4조 (목적 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 제99조, 제250조 제2항, 제389조 또는 제340조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 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 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 이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 主體 :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나. 客體 : 국가 기밀

다. 行爲

- (1) 탐지 : 간첩죄의 개념과 동일
- (2) 수집 : 간첩죄의 개념과 동일
- (3) 누설 : 기이 지득한 국가기밀을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기 위해 통보하거나 고지하는 일체 행위
- (4) 전달 :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가기밀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케 할 수 있는 일체 행위
- (5) 중개 : 특정인을 위해 국가기밀의 탐지·수집·누설이나 전달을 알선· 소개한 일체 매개 행위

라. 主觀的 要件

- (1) 국가기밀의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 등 사실 인식
- (2)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 인식

4. 自進支援·金品收受罪(第5條)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 자진지원죄

- (1) 주체 :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아니어야 하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2) 행위태양 : 「자진하여」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요구나 권유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 아무런 의사의 연락없이 자기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범행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록 타인의 요구나 권유 등에 의하여 범행하였다 할지라도 그 타인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아닐 경우에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금품수수죄

- (1) 주체 : 본죄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자진지원죄와는 달리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2) 행위태양 :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직접 수수하든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수하든 상관없다. 다만 목적수행과 일정 연관이 있어야 한다.²⁵⁾

5. 潛入·脫出罪(第6條)²⁶⁾

제6조 (잠입·탈출)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의 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가. 단순 잠입·탈출죄(제6조 제1항)

- (1) 주체 : 본죄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 또는 기타 일반인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25) 대법원 1980. 2. 12. 판결

26)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 결정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내로 잠입한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6조 2항의 규정은 그 잠입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되는 한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특히 헌법이 정한 주거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며 합헌임을 선언하고 있다.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행위태양 :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하는 것이다.

(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이란 반국가단체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을 지칭한다. 북괴의 불법적 지배하에 있는 소위 안전가옥과 해상에 있는 공작선 등도 포함된다.

(나) 잠입이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제로 행사되는 지역 즉, 사실상의 영토 내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도보로 육상으로 들어오든지 선편을 이용하여 해상으로 들어오든지 비행기를 이용하여 공로로 입국하든지 상관없으며, 제3국으로 통하여 우회적으로 입국하여도 무방하다.

육로로 들어올 경우에는 휴전선 월경 시 해상 또는 공로로 들어올 경우에는 영해·영공 침범 시 각각 기수가 된다.

(다) 탈출이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잠입과 마찬가지로 그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동기도 불문한다.

나. 특수 잠입·탈출죄(제6조 제2항)

(1) 주체 : 본죄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2) 행위태양 :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할 것이다.

(가) 지령이란 간첩죄에 있어서의 지령과 같이 지시와 명령을 의미한다.

(나) 목적이라 함은 '반국가단체의 목적'은 물론 '그 구성원의 목적' 및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도 포함된다.

6. 讚揚·鼓舞 등의 罪(第7條)

제7조 (찬양·고무 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 讚揚·鼓舞 등의 罪(第7條 第①項)

(1) 주체 : 아무런 제한이 없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도 주체가 될 수가 있다.

(2) 행위

(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할 것」

(나) 「찬양」: 특정 또는 불특정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관하여 동경·추앙·승배·칭찬의 뜻을 표명하는 것을 지칭하고 그 방법과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 (다) 「고무」: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관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인을 고려하여 사기를 양양케 하는 것을 지칭하고 찬양보다 좀더 적극적인 행위로 그 방법과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현실적으로 피고무자가 사기양양 등의 심리적 변화를 일으킬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
- (라) 「선동」: 문서, 도화 또는 언동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거나, 이미 생긴 결의를 조장케 할 자극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 (마) 「동조」: 반국가단체 등과 동일한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지칭하고 그 방법과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를 찬양, 고무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바) 「선전」: 어떤 사실이나 취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지시켜 이해를 촉구하거나 공명을 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 (3) 주관적 요건: 금품수수죄와 동일하다.
- (4) 이적의 인식이 없다고 한 판례
- (가) 제일동포 유학생이 동료 학생들과 대화를 하던 중 “북한이 남한보다 중공업이 발달되었다”는 발언을 한 경우²⁷⁾
- (나) 경찰관의 부당한 처사를 항의하는 뜻에서 “우리나라 법이 빨갱이 법보다 못하다”고 언동한 경우²⁸⁾
- (다) 주민간 시비 중 격분하여 “저런 새끼는 공산당 세상이 오면 총으로 쏘 죽인다”고 언동한 경우²⁹⁾

27) 대법원 1976. 11. 26. 선고 76도 3466
 28)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도 2022
 29)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도 2090

나. 利敵團體 構成·加入罪(第7條 第③項)

- (1) 주체: 아무런 제한이 없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 (2) 주관적 요건
- (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것」
- (나) 정부참칭 또는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국가단체와 구별됨.
- (3) 행위: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것」
- (가) 「단체」는 결사 또는 집단을 지칭하며 결사 또는 집단은 앞에서 말한 반국가단체의 의의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다.
- (나) 「구성 및 가입」은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죄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다.
- (다)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면 기수가 되고 실제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다. 利敵表現物事犯(第7條 第⑤項)

- (1) 주체: 아무런 제한이 없다.
- (2) 주관적 요건
- (가) 「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와 ② 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및 ③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 (나) 「목적」은 적극적으로 해당행위를 하려는 의욕이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되며, 그 인식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 (다) 이와 같은 목적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상 본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본죄가 성립치 않는다. 예컨대 일기는 작성자가

자기 개인의 생활체험을 자기만이 간직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생활 기록이므로 외부와의 관련사항이 수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그 내용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것이더라도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³⁰⁾

(3) 행위 : 「문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할 것」

(가) 「문서」 :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부호로서 사람에 의사나 관념을 표시한 물체를 지칭한다. 반드시 영속적인 것임을 요하지 않으나 다소 시간적 계속성이 있어야 한다. 형법상의 문서와는 다르다. 따라서 명의의 유무를 불문하고 초안, 초고, 사본 등도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시한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나) 「기타의 표현물」 :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현한 일체의 물건을 지칭한다. 문서는 그 예시이며 그 외 도화·녹음테이프·영화나 사진의 필름·디스켓·인터넷 가상공간 등도 이에 해당한다.

(다) 행위태양

- ① 「제작」 : 표현물을 작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 ② 「수입」 : 표현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법 여부를 불문한다.
- ③ 「복사」 : 표현물을 원형대로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소지」 : 표현물을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소지권한의 유무를 불문한다.
- ⑤ 「운반」 : 표현물의 소재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⑥ 「반포」 : 표현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배부되었음을 요한다.
- ⑦ 「판매」 : 표현물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 목적의 유무를 불문한다.
- ⑧ 「취득」 : 표현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자기의 소유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30)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 1360

罪刑法定主義原則에 違背 與否

우선,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찬양·고무·동조’라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명확성을 결하고 있어 행위자가 사전에 범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임의로 확대 해석할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소급효(遡及效)까지 인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우리 헌법 및 형법상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찬양·고무·동조’ 등 개념은 모두 내심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태양으로서, 그 범위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모든 법률규정이 그러 하듯이 본 조에 있어서도 입법기술상 이적행위의 유형을 일일이 정형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위헌론과 같은 논리를 편다면 형법상의 각종 개념, 예를 들어 ‘ 명예, 훼손, 모욕, 위협성’ 등의 개념도 반드시 명확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어 역시 위헌이라고까지 비약하게 될 것이므로 위헌론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 결정요지>

1991. 5. 31. 개정 후의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5항은 구법(1980. 12. 31.)에 없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구법 규정이 지니고 있던 용어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이라는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었고, 그래도 남은 용어의 추상성은 법적용·집행자의 합리적 해석에 맡겨도 되므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필요이상으로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결정함.

憲法上 基本權의 本質的 內容 侵害 與否

본 조는 종교의 자유, 양심 및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되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보장 규정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라는 견해가 있다.

우리 헌법 제37조 2항에서 명문으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안전보장·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 등 인간 정신생활에 관한 기본권은 인간의 내적·정신적 측면에 관한 한 그 본질상 법률로써도 규제·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정신적·내적 영역을 벗어나 종교적 행위, 종교적 집회·결사 또는 학문과 예술의 활동 등의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면 이미 내심의 의식단계를 벗어나 외부로 표출된 행위로서, 자유권의 보장이란 명분으로 또는 이를 빙자하여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까지 국민의 기본권이론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음을 당연한 논리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사상의 자유 등 기본권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하고자 입법된 것으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의 합헌적 한계를 이룬다고 할 것이며, 그 한계를 벗어나는 적용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견지에서 본 조의 규정이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규정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요지〉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에긴 하나 무제한 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규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같은 법을 위헌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결함.

7. 會合·通信罪(第8條)³¹⁾

제8조 (회합·통신 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가. 主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나 그 상대는 반드시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주체는 상대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31)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 결정 “국가보안법 제8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구법 규정의 위헌적 요소는 제거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고 결정하였다.

나. 指令事項

목적협의 등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우연히 만나서 인사를 나눈 경우, 단순한 대면 등은 본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會合

밀입북 학생들이 평양에서 범민족축전을 논의하기 위해 노동당 간부를 만난 경우, 국내인사가 서울에서 남파간첩을 간첩인 줄 알고 만나서 국내정세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경우

라. 通信

우편, 전신, 전화 등 - 한총련, 범민련 등이 북한과 팩스 송신하는 경우

마. 其他

인편에 의한 연락, 무인포스터에 의한 연락, A3방송에 의한 지령수수 등

8. 便宜提供罪(第9條)

제9조 (편의제공죄) ①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가. 主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누구라도 본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나. 客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야 한다.

다. 行爲態樣

- (1) 총포, 탄약, 화약, 기타 무기의 제공
- (2)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제공
- (3) 잠복, 회합, 통신, 연락을 위한 장소의 제공
- (4) 기타 방법으로 편의제공

9. 不告知罪(第10條)³²⁾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에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가. 主體

아무런 제한이 없음.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한 자도 자기나 공범이 범행에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나. 主觀적 요건

「국가보안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제3항 중 제1항의 미수범,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 것」

- (1) 「죄를 범한 자」…편의제공죄에 있어서와 동일한 의미임.

32) 헌법재판소는 1998. 7. 17. 결정을 통해서도 “불고지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저해하는 타인의 객관적 범죄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세계관, 신조 등 개인적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남북한간 긴장 관계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죄를 범한 자라는 정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확실한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³³⁾ 그러나 본범의 인적 사항이나 범죄실행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음. 또한 불고지죄의 규정을 모르는 경우에도 본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³⁴⁾

* 잠입·탈출죄를 대상범죄에서 삭제

다. 행위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할 것」

(1)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 국가보안법 위반 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 한하지 않고 수사나 정보업무를 취급하는 전 기관을 포함함.

(2) 「고지」: 알리는 것을 의미. 그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구두에 의하든 문서에 의하든 상관없음. 고지의무의 발생 시기는 국내에서 범행을 한 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을 안 때이고, 국외에서 범행을 한 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이 우리 나라의 수사권이 미치는 지역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안 때이며, 이때부터 지체없이 고지하지 않으면 본죄가 성립함. 신고의 지연여부는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 따라서 일본에 있을 때 일본에 있는 자가 본범 위반범행을 한 것을 알고도 귀국하여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본죄가 성립치 않음.³⁵⁾

한편 판례는 범죄자가 북한지역으로 탈출한 후 안 사안에 대해서는 탈출 전의 범행에 대한 수사과 재잠입 등에 대한 감시의 필요상 고지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³⁶⁾ 또한 고지의무는 타인의 범행을 저지로 하는 것이므로 자기나 공범관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음.³⁷⁾

따라서 본범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범행을 한 경우(예컨대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과의 회합, 금품수수, 편의제공 등)나 본범과 공범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33) 대법원 1966. 7. 12. 선고 66도 470
34) 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4
35) 대법원 1966. 12. 13. 선고 66도 1330
36) 대법원 1969. 4. 29. 선고 68도 1780
37) 대법원 1969. 9. 22. 선고 69도 1219

(特別刑事訴訟規定)

1. 參考人的 拘引·留置

○ 국가보안법 제18조(참고인의 구인·유치)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이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 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 할 수 있다.
-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가. 의의

형사소송법상 수사단계에 있어서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의무가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소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³⁸⁾ 또는 제221조의2(증인신문 청구)의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범죄에 대하여서는 참고인의 진술이 극히 중요할 때가 많고, 특히 그것은 대개 본범과 일정한 범행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기관의 구인과 유치를 인정한 것이다.

나. 요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할 것. 정당한 이유는 객관적 또는 주관적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이어야 한다. 예컨대 질병이나 여행 등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된다.

38) 대법원 1979. 6. 12. 79도 792.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1984. 3. 29. 84 모 15.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에 있어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또는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전에 미리 그 증거를 모집 보전하여 두는 제도로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결정하였다.

다. 부수적 조치

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 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유치기간은 어디까지나 임시일 뿐이므로 필요한 최저 기일 내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구속기간의 연장

○ 국가보안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 ①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②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1992. 4. 14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조 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 효력상실>

가. 의의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는 대부분 그 형태가 조직적이고 배후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의 포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형사소송법상 통상적인 구속기간만으로는 충분한 수사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조는 이와 같은 국사범의 수사에 대하여는 수사기간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 절차 및 조건

(1) 대상범위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0조의 범죄이다.³⁹⁾ 미수범은 물론 예비·음모범도

39) 국가보안법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제10조의 죄(불고지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에 따라 본법의 의한 구속기간의 추가연장이 불가능함.

포함한다.

(2) 절차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다.

(3) 조건

법원이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본법 위반의 범죄는 대개가 조직적이고 배후가 있는 범죄이고 확신범적·사상범적 성격이 농후하므로 일반범죄보다 수사에 상당한 기간이 더 필요한 것이 보통이다.

(4) 연장기간

사법경찰관은 1차, 검사는 2차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매회 10일 이내이어야 한다.

3. 공소보류

○ 국가보안법 제20조(공소보류)

제20조 (공소보류)

- ①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가. 의의

공소보류제도는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한 제도로서 기소유예와 동일한 취지에 있는 것이지만 형사 정책적 견지에서 이보다 일보 전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다 적극적인 형사 정책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완전한 활용이나 역용 공작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위험성이 수반되는 것이기도 하다.

나. 요건

- (1) 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한다(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9조 참조).
- (2) 공소보류기간은 2년이다.

다. 효과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2년 동안 취소됨이 없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기소유예와 크게 다른 점이다. 즉,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가 경과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범인을 소추할 수 있음에 대하여 공소보류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2년의 기간으로 소추할 수 없게 된다.

라. 취소

- (1) 공소 보류된 자가 보류기간(2년) 중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공소보류자 관찰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검사가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 (2) 공소보류가 취소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재 구속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할 수 있다. 구법(법률 제549호)에서는 취소의 경우에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을 제한하였으나 신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구속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第3章 防諜一般



'96 동해안 침투 좌초된 북한 잠수함의 모습

第1節 防諜一般理論

1. 防諜의 概說

현대국가의 존립과정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적대관계 또는 우호관계를 상호

구성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가 상호간에는 각자 자기 국가이익을 위해서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첩보수집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이와 반대로 자기국가의 첩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방어활동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 즉, 공격과 방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첩보수집활동에 대한 방어활동인 방첩은 곧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防諜의 定義

- 가. 외세 또는 국내 불순세력의 국가 위해행위로부터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통제 방안이다.
- 나. 적의 정보활동에 대비하여 자기편을 보호하는 노력으로서 아축에 대한 간첩, 전복, 태업행위 등을 적발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직된 활동을 말한다.
- 다. 간첩으로부터 첩보를 보호하고, 전복으로부터 인원을 보호하며, 태업으로부터 시설이나 물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적극적·소극적 보안대책에 관계되는 활동을 말한다.

3. 防諜의 目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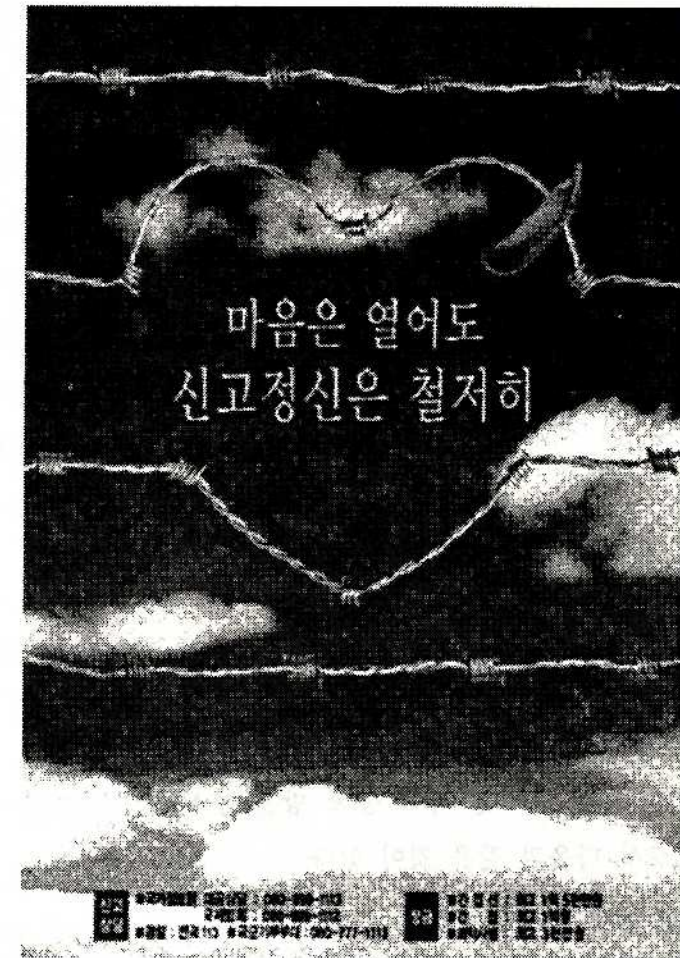
- 가. 간첩
대상국가에 대한 전복·태업행위 및 첩보수집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국에 잠입한 자 또는 이를 지원, 동조, 협조하는 자를 말한다.
- 나. 태업
국가의 방어력 또는 전쟁수행능력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파괴, 손상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행위를 말한다.

다. 전 복

위헌적인 방법으로 국가를 변혁시키거나 국가기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防諜의 基本原則

가. 완전협조의 원칙



대국민 홍보용 포스트

아무리 잘 훈련된 방첩관에 의하여 조직된 방첩기관이라 할지라도 방첩기관만의 힘을 가지고는 방첩활동을 100%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방첩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첩기관 외에 사회일반 구성원으로부터 전폭적인 협조를 얻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협조기관으로서 ① 전문기관, ② 보조기관, ③ 일반대중 등 사회구성요소의 완전협조가 이루어져야만 방첩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나. 치밀의 원칙

간첩을 한사람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 하에 공작원이 물색되고 교육되며 또한 교묘한 방법으로 가장하게 된다. 이렇게 간첩인 적의 행위는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방첩기관은 그들에 비해 보다 세밀한 계획과 준비로서 방첩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그들과의 정보전에서 결국 비참한 패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 계속접촉의 원칙

방첩기관이 간첩용의자를 발견하였다고 해서 즉시 검거해서는 안되며 조직망 전체가 완전 파악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형·무형의 접촉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조직망 전체의 면모가 드러나고 완전한 윤곽을 밝혀 간첩망을 일망타진할 때까지 ① 탐지, ② 판명, ③ 주시, ④ 이용, ⑤ 타진 등 단계적으로 계속접촉을 유지하여야 한다.

5. 防諜의 手段

가. 적극적 방첩수단

아국에 침투되어 있는 적 및 적의 공작 망을 분쇄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공격적인 수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적에 대한 첩보 수집

적에 대한 정보가 없는 한 방첩기관은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첩보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적의 첩보공작 분석

입수된 적의 정보를 토대로 하여 적의 공작방향과 그 수단방법을 파악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3) 대상인물 감시

적에 대한 정보를 입수, 분석하여 적의 활동방향을 파악했으면 기술감시 및 미행감시의 방법으로 대상인물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침투공작 전개

대상단체 및 지역에 우리 공작원을 직접 침투시키거나 아니면 이미 대상지역 및 단체내부에 있는 자를 포섭하여 대상의 정보탐지 및 증거수집을 하기 위한 공작을 전개하여야 한다.

(5) 역용공작

검거된 간첩을 전향시켜 우리 나라에 충성 협조할 것을 맹세받아 역용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간첩을 활용하여 적의 첩보수집 또는 다른 간첩을 검거하는데 이용하여 사명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6) 간첩신문

검거된 간첩을 신문하여 새로운 적의 공작방향과 기타 제정보를 입수, 활용하여야 한다.

나. 소극적 방첩수단

적의 비밀공작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자체보안을 기능을 발휘하는 방어적 수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정보 및 자료보안의 확립⁴⁰⁾

적이 목표하고 있는 첩보나 정보가 내포되어 있는 자료(문서포함)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밀사항에 대한 표시 방법 또는 보호 방법 등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40) 정보 및 자료보안의 확립을 위하여 비밀을 작성하거나 생산하는 자가 비밀내용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I, II, III급 비밀로 구분한다.

(2) 인원보안의 확립⁴¹⁾

비밀을 취급하기 위한 인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비밀취급허가제도를 확립하고 비밀사항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원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3) 시설보안의 확립⁴²⁾

비밀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적의 침입과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경비, 출입자에 대한 제한, 단속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4) 보안업무의 규정화

정보 및 자재보안과 인원보안, 시설보안 등을 위해서는 통일성 있는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안업무의 규정화가 필요하다.

다. 기만적 방첩수단

아무리 훌륭하게 보안조치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밀이 적에게 하나도 누설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비밀이 적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상황 하에서 우리가 기도한 바를 적이 오인, 판단토록 방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만적 방첩수단은 다른 수단과는 달리 고도의 기술과 계획이 요구되는 방첩활동이다.

(1) 허위정보의 유포

전연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허위 조작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바를 적이 오인토록 하는 기술이다.

(2) 유언비어의 유포

구두로 퍼져 나가는 전혀 확실성과 출처가 불분명한 풍설을 퍼뜨려 적이 오인토록 하는 방법이다.

41) 인원보안의 확립을 위하여 I급 및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와 II급 및 III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42) 시설보안의 확립을 위하여 보호구역, 설정·운용하고 있으며,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 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3) 양동간계시위

거짓 행동을 적에게 시위함으로서 우리가 기도한 바를 적이 오인 판단케 하는 방법이다.

第2節 間 諜

1. 意義

간첩이란 타국에 대한 첩보수집행위, 태업행위, 전복행위 등을 목적으로 대상 국내에 잠입한 자 또는 이를 지원, 동조하거나 협조하는 자를 말한다.

가. 형법 제98조(간첩)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나. 국가보안법 제4조(일반목적수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

다. 군형법 제13조

적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또는 군사기밀을 누설한 자

2. 間諜의 區分

가. 대량형 간첩

간첩으로서 필요한 교육을 받은 자들이 대상국가에 밀파되어 특수한 대상의 지목도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보를 입수하는 자들을 말한다.

대량형 간첩은 국가에 위해가 적으며 수적으로 대량이기 때문에 검거될 위험이 크며, 또한 지명형 간첩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수도 있으며, 주로 전시에 파견되고 상대국가가 색출하기가 용이하다.

나. 지명형 간첩

필요한 비밀활동 및 공작기술에 관한 교육을 받고 어떠한 특정목표와 임무를 부여받아 특수한 중요정보를 수집토록 개별적으로 지명하여 파견되는 자를 말한다.

지명형 간첩은 국가에 끼치는 위협도 크고, 또한 이는 고정간첩으로 합법 신분을 보장받는 경우가 많으며, 전쟁시를 막론하고 파견되며, 색출이 곤란하다.

3. 間諜의 種類

가. 활동방법에 의한 분류

(1) 고정간첩

일정한 지역 내에서 영구적으로 간첩행위를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고 활동하는 간첩을 말한다. 고정간첩의 특징은 일정한 공작기간이 없고, 합법적으로 보장된 신분이나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2) 배회간첩

고정간첩에 정반대 되는 간첩으로서 일정한 주거없이 전국을 배회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간첩이나, 배회활동 중 확고한 토대가 구축되고 합법적 신분을 획득하면 고정간첩으로 변할 수 있다. 배회간첩의 특징은 일정한 공작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점이다.

(3) 공행간첩

외교관 등과 같이 타국에 공용의 명목 하에 입국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상대국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간첩을 말한다. 공행간첩의 특징은 대상국가에 입국할 때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이다.

나. 사명에 의한 분류

(1) 일반간첩

통상 간첩이라 할 때는 일반간첩을 말한다. 일반간첩은 일반적인 첩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태업공작이나 전복공작을 전개하는 간첩이다. 우리 나라에 잠입한 대부분의 간첩은 일반간첩에 속한다.

(2) 무장간첩

무장간첩은 주로 남파간첩들의 호송, 월북안내, 연락 및 '남파루트'를 개척하기 위하여 특별히 훈련된 간첩을 말한다. 또한 무장간첩은 부차적 사명으로 전방 휴전선 일대의 군사정보 수집의 사명도 띠고 있다.

그리고 무장간첩은 단기공작으로 남한 내 요인암살과 사회질서를 혼란시키기 위하여 소대단위 또는 중대단위로 침투하는 경우도 있다.

(3) 보급간첩

남파간첩의 공작활동에 필요한 공작금품, 장비, 증명서 원본 등 물적 지원의 사명을 띠고 남파되는 간첩을 말한다.

(4) 증원간첩

북한은 대남 공작에 많은 간첩을 소모한 뒤에 공작원의 인적고갈에 직면하자 남파간첩들의 연고자, 불평불만자, 실업자, 불량배, 무직자 등을 유인 월북시키거나 어부, 군인 등을 입북하여 간첩교육을 시켜 간첩으로 남파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증원간첩이라 한다.

4. 間諜網의 形態

간첩망이라 함은 간첩이 대상국에 침투하여 간첩행위를 함에 있어서 공작원을 포섭하고 지하당을 조직하는 형태를 말한다.

가. 삼각형

북한간첩들이 지하당 조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망 형태로서, 지하당 구축을 하명받은 간첩은 5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하당을 구축한다. 이 망에서 행동공작원 포섭을 5명 이내로 제한한 것은 노출 가능성과 일망타진 시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서클형

간첩자신이 망을 조직하여 운영하거나 자기가 조직·운영할 수 없는 조직은 그 조직체의 주요 핵심 '멤버'를 인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강한 유대로 인간

관계를 결속시켜 놓고 간첩의 주의나 사상에 동조하고 호응하게끔 하는 조직 형태로서 대개의 경우 전선조직에 많이 이용된다.

다. 단일형

단일형은 '점' 활동형태로서 현재 대남 간첩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대남 간첩으로 머무르고 있는 동안 간첩 상호간의 종적이나 정적으로 개별적인 연락을 일체 회피하는 망 형태이다.

이 간첩형의 특징은 간첩자신이 어떠한 조직도 구축하지 않고, 기성조직을 이용함이 없이, 직접 단독 활동하는 점이다.

라. 피라미드형

이 형태는 6.25사변 전까지 북한간첩들이 사용한 망 형태이었으나, 일망타진 특히 전체조직의 노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선조직을 형성하거나 세포 망을 확장시키는데는 이 방법에 의존하게 되므로 주의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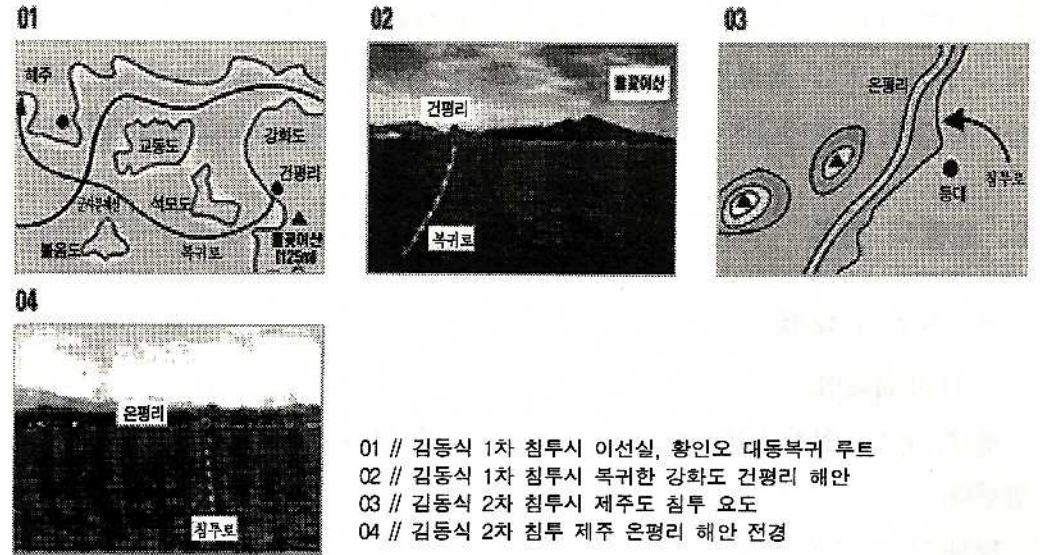
마. 레포형

이 망은 피라미드형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또는 주공작원 상호간에 연락 원을 두고 있는 형태이나, 오늘날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 망 형태이다.

5. 北韓의 間諜 南派方法

가. 해상을 통한 남파방법

해상을 통해서 공작선을 이용하여 침투하는 간첩 남파방법이다. 공해 상으로 남하한 모선에서 불리된 자선이 어선으로 위장 목표해안까지 야간을 이용하여 항해한 다음 육상으로 잠입하는 방법인데 고무보트, 소형잠수함 등 고도의 성능을 가진 장비를 이용하고 있다.



나. 육상을 통한 남파 간첩

녹음기를 이용해서 비합법적 복장을 하고 휴전선의 철책을 절단후 통과하거나 잠수복을 입고 강을 이용해서 보통 2~3인 1개조로 편성하여 침투한다.

다. 일본을 통한 남파방법

조총련 자체에서 직접 침투시킬 때에는 합법절차를 통하여 여권을 입수하거나 타인의 여권을 변조하여 합법을 가장 침투시키고, 북한에서 인계받은 간첩은 비합법방법으로 침투시키며, 북한 자체에서 일본을 우회 침투시키는 경우는 민간인으로 합법을 쟁취한 후 여권을 발급받아 가장 침투시키고 방일자 및 밀항자를 간첩으로 침투시킬 경우에는 자비·강제송환되는 형식으로 침투시킨다.

第3節 怠業

1. 怠業의 定義

태업은 대상국가의 방위력 또는 전쟁수행능력을 직접, 간접으로 손상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대상국가의 방위력 또는

전쟁수행능력을 파괴, 손상하기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주체는 적국이거나 또는 동맹국의 지령을 받은 자이거나, 아니면 전혀 배후가 없는 순수한 개인적 동기에서 감행한 단독행위자라도 이는 모두 태업분자인 것이다.

2. 總業의 形態

가. 물리적 태업

(1) 방화태업

성냥, 유류, 인화물질로 목표물에 화재를 발생시킴으로써 행해지는 태업을 말한다.

방화태업의 특성은

- (가) 가장 파괴력이 강하다.
- (나) 어떠한 목표에 대해서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 (다) 우연한 사고로 가장하기가 쉽다.
- (라) 인화물질의 습득이 용이하다.

(2) 폭파태업

T.N.T. 다이너마이트 등 폭발물을 사용, 목표물을 폭파함으로써 행해지는 태업이다.

폭파태업의 시기는

- (가) 파괴가 전체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할 때
- (나) 목표물을 파괴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한 절단력, 분쇄력을 필요로 할 때이다.

(3) 기계태업

철물·설탕물 등을 '모터'에 투입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전철기를 사용하여 열차를 탈선, 전복 또는 충돌케 하는 등 기계류의 조작에 의하여 행해지는 태업이다.

이는 주로 장기공작원에 의하여 행해지며 그 특성은

- (가) 범행이 용이하다.

(나) 목표물에 접근하여 있는 자가 실행한다.

(다) 특별한 도구나 수단이 필요없다.

(라) 용이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나. 심리적 태업

(1) 선전태업

허위사실 또는 유연비어 등을 유포시키든지 혹은 반국가적 선전을 함으로써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여론을 혼란케 하여, 전투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이다.

(2) 경제태업

증권, 은행권 등을 위조·남발하여 신용을 떨어뜨린다던가 혹은 노동쟁의 행위를 야기함으로써 전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이다.

(3) 정치태업

부당한 시책을 하던가 혹은 정상적 개선과 개량을 방해한다던가 또는 부당하게 정치적 물의를 야기함으로써 전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이다.

3. 總業의 目標

가. 태업목표의 필요요건

- (1) 전략적, 기술적 가치를 가진 목표라야 한다.
- (2) 태업에 필요한 기구가 용이하게 입수되고 접근이 가능한 목표라야 한다.
- (3) 일단 파괴되면 대치가 곤란한 목표라야 한다.

나. 물리적 태업의 목표

- (1) 수송기관
- (2) 통신시설
- (3) 산업시설(동력, 수도시설 포함)

다. 심리적 태업의 목표

국가안전에 손해를 미치게 하는 행위로서 반국가적 여론을 환기시켜 국민으로 하여금 불충성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 유포).

4. 怠業工作員의 類型

가. 적 공작원

적 공작원은 적 또는 대항세력의 정보기관에 의하여 철저하게 교육 훈련되고 지휘조종을 받은 공작원을 말한다.

나. 단독공작원

단독공작원은 적이나 대항세력의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 훈련되지 않고, 또 지휘조종을 받지 않는 공작원으로 전혀 배경이 없는 개인적 동기에서 행하는 공작원을 말한다.

5. 怠業對策

태업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방어계획 하에 첫째, 태업에 대한 취약 목표를 결정하고 둘째, 취약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 계속적으로 보호대책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태업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은 보안유지이다. 따라서 최소한 요구되는 방비대책은 아래와 같다.

가. 대 태업기관 확보

태업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전담형사를 배치, 신속, 정확하게 태업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조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나. 정확한 신원조사 실시

정부 각 기관 및 국가 주요산업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의 신원조사를 철저히 하여 인원보안 확립으로 적 공작원의 침투접선을 저지하여야 한다.

다. 신뢰적인 정보망 구성

태업에 대한 신속한 정보입수를 위해서 정보전담형사 배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자진해서 협조해 주는 것이 보다 신속하기 때문에 신뢰적인 정보망 구성이 절대 필요하다.

라. 보안측정 철저

보안측정을 물샐틈없이 철저히 하여 적 공작원의 접근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중요시설원의 교육훈련 철저

중요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원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태업분자를 색출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자동경보 장치

중요시설 및 정부 각 기관에 경비원과 수위들이 있으나 이들 외에 자동경보 장치에 의한 태업분자 접근방지책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第4節 顛覆

1. 概念

전복이란 공산주의자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또는 이와 유사한 불순 정치세력에 의하여 폭력수단을 사용하는 위헌적인 방법으로서 정권을 탈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2. 顛覆의 形態

가. 국가전복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한 계급이 타 계급에 대하여 행하는 무력투쟁을

말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정치적 위기상태를 혁명정세 또는 혁명의 발생조건이라 한다. 따라서 전복(공산주의혁명)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혁명정세라고 한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대상국가의 전복계획에 있어서 장기적인 면과 단기적인 면에서 판단하고 있는 바, 각 방면 공허 조수의 간만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전복의 최적기를 만조기정세라 하고 전복의 불만기인 간조기정세에는 정세가 전환될 때까지 지연작전으로 상대방을 교란하고 자체역량을 축적하면서 평화공존 추구 등으로 표현하여 위장하는 전략전술을 택한다는 것이다.

나. 정부전복

정부전복이란 동일계급 내의 일부세력이 권력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정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타 계급을 기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顛覆의 手段

가. 전위당(공산당) 조직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혁명의 핵심적 동력으로서 공산당을 조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위부대라고 한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최종목표인 상대국의 전복과 그 폐허 위에 공산주의 독재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스스로 공산당을 조직하며 이는 계급당, 국제사회당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 통일전선 구성

공산당이 어떤 정치적 목적 또는 투쟁대상을 타도하기 위하여 특정의 정치적 상황 하에서 적대관계를 극복하여 동조하는 각 계급, 정당 내지 개인을 제휴 이용하는 종합정치 전술을 말한다.

통일전선 형성의 전개과정은 2단계로 구분하며 첫째, 공산당의 약세를 보강하기 위한 연합단계이고 둘째, 연합세력에 의하여 전복대상을 타도한 다음 연합제과의 각개격파에 의한 독자생존단계로 이전한다.

다. 선전 및 선동

공산당은 계속적인 선전과 선동으로 광범한 대중의 지지와 동정을 고취시켜 반체제운동을 전개한다.

라. 파업과 폭동

파업과 시위 등은 공산주의자들이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기초적 투쟁형태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침투한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들에게 불평불만을 선동하여 임금인상, 노동시간의 단축,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한 태업, 파업, 시위 등을 행하게 된다.

마. '게릴라' 전술

공산주의혁명을 위한 전복행위의 근거지 확보를 위한 투쟁수단이다.

바. '테러' 전술

공산당은 대중동원이란 선전, 선동만 가지고서는 잘 되지 않음을 알고 있다. 이 때에는 반대자들과 비협조자들을 제거하거나 무력화해 버리고, 아니면 대중동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박과 살인, 납치 등을 구사하는 투쟁형태를 말한다.

4. 對 顛覆活動

대 전복활동이란 국가사회의 기본질서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개인 및 집단적 불법행위를 예방, 적발, 분쇄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대 전복활동의 대상

(1) 공산세력

기존 법질서나 사회체제를 폭력으로 뒤엎고 공산당 독재정권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다.

(2) 과격적 보수세력

국수주의자나 반혁명주의자로서 정권을 탈취하려는 세력이다.

(3) 기타 대중운동

대중운동은 흔히 법질서를 무시하고 폭력화할 계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공산세력이 편승할 수 있고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나. 대 전복활동

(1) 기본정보 수집

- (가) 북한공작원의 임무분석 및 지하당 조직상태
- (나) 용공세력의 활동상태
- (다) 혁신세력의 활동상태
- (라) 보수단체 세력의 동향
- (마) 군 내부의 혁신계 및 용공계 침투상태
- (바) 재한외국인·단체의 동향
- (사) 기타 대중운동의 동향

(2) 각 대상의 중요정보 수집

각 대상에 대한 부단한 감시를 실시하여 조직활동, 자금유통, 상부공작, 선전 폭동 및 실력투쟁 등을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정계, 관계, 재계거물과의 접촉상태를 규명하여야 하며 이것은 주요한 자금 "루트"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다. 일반적인 대 전복 대책

- (1) 국민계몽
- (2) 적의 선전으로부터 차단
- (3) 반공단체의 육성
- (4) 대 전복 층의 전담적 연구

第5節 北韓의 對南 戰略·戰術

1. 對南 戰略

가. 서설

예로부터 전략이란 비밀이며 지략의 소산이다. 그리고 전략은 그것이 정치적 차원의 것이건 군사적 차원의 것이건 심지어는 상업적 차원의 것이건 본질적으로 적이나 경쟁자를 오도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삼고 있다. 그것은 자기 목적을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이다.

세계혁명 및 세계문화라는 인류정치사상 최대의 목적을 실현시키려는 공산주의자들의 발상법은 본질적으로 기만적이며 전략·전술적 근성에서 출발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은 그러한 행동을 정당화하고 신앙화하기 위해 독특한 세계관을 조작하였다. 그리고 강력한 반대파, 소극적인 중립주의자, 감상적인 이상가, 인도주의자들을 포섭, 현혹시키는데 유효한 기만술책과 폭력수단을 전문적으로 개발하였고 공산주의자들은 상대방의 약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무기까지도 이용하는 기술법을 개발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만고불변의 진리로 신봉하고 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공산화하려는 그들의 야욕에는 변함이 없다. 공산주의 혁명은 힘의 철학에서 출발되고 그것으로 판결을 내려고 한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그들은 적은 힘으로 큰 힘을 정복하려 하고 또 그렇게 해왔던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힘을 약화시키는 한편 제3자의 협력을 얻는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적 변수에는 자기편의 정세, 상대방의 정세, 국제정세 등 세 가지가 있으며 여기에는 시국적 개념과 힘이라는 기능적 개념이 동시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3대 변수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수단에 의해서 조작되었고 그 수단은 기만적 선전과 역량적 조직이다.

나. 대남 전략의 기초

북한이 추구하는 당면 정치목표는 첫째로 북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시키는 것과, 둘째로는 남한에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성취시키는데 있다고 한다. 이 두 가지 혁명 목표 중에서 두 번째인 남한에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채택된 정책이 바로 대남 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러한 대남 전략은 해방 후부터 일관성있게 추구해오고 있으나 주·객관적인 정세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전략적인 방침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 혁명이론에서는 「정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에서의 근본 문제이며 혁명의 승리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라고 중시하고 이러한 근거에서 대남 전략의 기본목표를 「인민정권」 수립에 두고 있다. 즉, 혁명의 주력군에 의해서 폭력의 방법으로 정권을 먼저 장악한 다음 그 정권을 무기로 하여 「민주개혁」(공산화정지 작업)을 단행하는 것이 전략적 과업 수행이고 현 시점에서는 「민주연합정부수립」이라는 전술적 단계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는 것을 당면 투쟁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략이란 일정한 혁명단계가 끝날 때까지는 특별히 변화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되고 있으나 전략적 방침의 순위에 있어서는 변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전술문제의 차원에서는 항상 가능성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 혁명기지와 지역혁명론

북한은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혁명의 이중성을 전제로 한 대남 전략을 획책하고 있는 바, 「조선혁명의 전국적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남과 북은 서로 분단되어 판이한 두 발전추세와 계급관계가 형성되어 동일한 혁명과업이 제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두 지역에서 각기 자기의 특성에 따라 혁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혁명의 이중성과 그에 따른 대남 전략을 추구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에서의 혁명은 혁명기지노선이고 남한에서의 혁명은 지역혁명노선으로 이것이 북한의 대남전략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기틀이 되고 있다.

(가) 혁명기지노선은 해방직후 소련군이 진주한 유리한 여건을 이용하여

북한 지역의 정치·경제·군사적 기반을 우선 강화한 뒤 그 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전 한반도에 걸친 혁명을 완수한다는 사상이다. 이 혁명기지노선에 따라 북한에서는 건당, 건국, 건군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제시하고 혁명의 참모라고 할 수 있는 당을 먼저 건설하고 「인민정권」인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정권을 통한 「민주개혁」이라는 명목으로 토지개혁을 비롯한 산업국유화 등 사회주의의 기초작업을 단행하고 복잡한 계층들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반사회주의적인 요소와 반대파세력을 숙청하고 자기의 정치세력들로 재편하면서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나아가서는 「전조선 혁명」 수행을 위한 무장력인 「인민군」을 창설하고 1948년 9월 9일에는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그후 계속해서 사회주의혁명 과업의 수행과 더불어 정치역량, 경제역량, 군사역량 등 혁명기지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역량강화에 총력을 집중했다.

(나) 지역혁명노선은 분단으로 인한 남북의 이질화가 별개의 혁명과업을 생성시켰고 통일 전략의 목표를 「선 혁명 후 통일」로 새로이 구상하게 됨에 따라 지역혁명 수행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였는데 종래에 표방한 혁명기지노선은 북의 혁명역량(정치력, 경제력, 군사력)과 그의 역할만을 결정적인 담보로 간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일방적인 정치적 확산과 물리적 강요에 의해서 조국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이며, 지역혁명론은 남한이 「혁명역량」을 중요시하고 그의 정치세력이 주동이 되어 혁명을 먼저 성취시킨 다음 북의 사회주의역량과 합작해서 통일을 실현한다는 노선이다.

그러나 지역혁명(남조선혁명)이라고 하여 북의 혁명기지와 무관하거나 과소평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한의 지역혁명은 북의 혁명기지의 강력한 지원 하에서만 독자적으로 관련사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북의 사회주의역량의 강화만이 통일의 기본담보로 되고 지역혁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2) 혁명역량 강화방침

북한에서는 「남조선혁명」이라는 독자적인 지역혁명론을 제시하면서부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해서는 3대혁명역량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것은 「선 혁명 후 통일」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총체적 전략 방침으로써 1964년 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4기8차 전원회의에서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으로 제시된 것인데 3대혁명역량이라 함은 첫째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잘하여 북의 혁명기지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한다는 북한의 혁명역량강화, 둘째로 남한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 세움으로써 남한혁명역량을 강화한다는 남한혁명역량강화, 셋째로 「조선인민」과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국제혁명역량 강화방침이라는 것이다.

이 3대혁명역량강화는 북한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기본방침으로 통일과 혁명에 있어서 상호 불가분적인 관련성을 가지면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나 주동적이며 결정적인 것은 주관적 혁명역량이라고 주장하고 「주체적 혁명역량」이란 북의 혁명역량과 남의 혁명역량으로서 그 이론적 근거를 「김일성주체사상」에 두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3대혁명역량의 지위와 역할은 북한의 사회주의역량이 주체적 역량으로서 주도적이면서 결정적 역할을 하며 남한의 혁명역량은 혁명의 주체적 역량이기는 하나 북의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역량이고 국제혁명역량은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지원역량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가) 북의 혁명역량강화방침 : 북의 혁명역량은 혁명기지노선에 따라

혁명의 주동적이며 결정적인 원동력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역량, 경제적 역량 군사적 역량으로 대별되고 있다.

「정치적 역량」은 「혁명투쟁은 곧 정치투쟁」이라는 공산주의자들의 명제에 따라 선차적 과업으로 제시하여 「조선노동당」을 강화하고 주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적 역량」은 「정치적 역량」과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물질적

담보」의 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사회주의체도의 「우월성」을 인식시키고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사적 역량」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위노선」에 따라 「인민군대의 간부화, 무장의 현대화, 전 국토의 요새화, 전 인민의 무장화」라는 4대 군사노선의 철저한 추진을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에의 혁명역량강화방침」은 북한의 정권유지와 자체방어를 도모하면서 남한 내 혁명세력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결정적 시기에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힘의 압도적 우세보장」책략이며 남침의 실질적 「혁명역량」인 것이다.

(나) 남의 혁명역량 강화방침 : 북한의 논리상 「남한내부 혁명역량」을 「북한내혁명역량」과 함께 「주관적 역량」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남한 내 혁명역량 강화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북의 사회주의역량과 남의 혁명역량(민주역량)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혁명적대사변(결정적 시기)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없을 뿐더러 통일의 유리한 기회마저 놓쳐 버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남한 내에 이른 바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여야 하고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기 위한 방침은 공산화 혁명의 기본계층으로 되는 노동자, 농민들을 지하당 주위에 결집시키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혁명의 전략·전술을 자체로 세울 수 있는 우수한 사람들로 지하당을 구축,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각계 각층 군중들을 통일전선에 묶어 세우는 것」으로 통일전선형성은 「혁명의 주력군」 양성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반혁명세력을 고립시키며, 혁명역량을 보호 확대하고 혁명의 주력군을 보조할 수 있는 「힘있는 부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전선의 대상은 「남한의 인테리, 청년학생, 도시 소시민, 양심적 민족 부르조아지를 비롯한 각계 각층 군중」으로 설정하고 있다.

끝으로 북한은 「남한혁명역량」 강화와 과업으로서 「반혁명역량」 약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혁명역량」약화는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제부문을 돈 상태를 조성하는 것인데 특히 「적군와해사업」을 증시하고 있다.

이러한 「남한 혁명역량 강화방침」은 「민주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북한의 대남침투도발, 정치모략심리전 활동을 통한 「용공의식화」공작, 무장간첩에 의한 교란활동과 지하당 공작, 남북대화를 빙자한 「합작」전술과 통일전선전략 시도 등도 모두 「남한혁명」및 적화통일을 겨냥한 여건조성과 「역량」부식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국제혁명역량 강화방침 북한은 대남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 측면지원 세력 획득에 목적을 두고 국제혁명역량을 강화하는데, 이는 북한이 추구하는 혁명이 민족적인 동시에 세계공산혁명의 한 구성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강화를 위해서는 ① 사회주의국가 인민과의 단결, ② 제3세계 인민과의 단결, ③ 민족적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나라의 인민과 단결, ④ 자본주의 나라 노동계급과의 단결, ⑤ 세계 평화애호 인민과의 단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중소의 경쟁적 지원과 공산국가 및 국제공산주의세력과의 「전투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비동맹세력의 지원을 얻고 남방삼각관계의 균열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며, 또 국가 대 국가형식의 외교와 「인민 대 인민외교」방식을 총동원하고 있다. 특히 비동맹외교를 중심으로 반미 공동전선결성 책동이나 국제테러 수출은 한국고립화 획책의 일환인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국제혁명역량 강화방침」은 결국 남한의 적화를 위한 국제적 지원세력의 획득에 주안을 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그들 지역을 세계공산화를 위한 「사회주의 동방초소」로 표방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화전략에 기여하게 하려는 측면도 있다 하겠다.

다. 인민민주주의혁명 성격과 내용

원래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은 1930년대 초 스탈린에 의해 작성되고 소련에 의해 수출된 공산주의혁명의 변형된 유형으로서 처음에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으로 명명되어 왔다. 그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소련점령군 하에 놓은 동구와 아시아 제국에서 소련점령군의 힘의 배경 하에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행하는 실천적 단계에서 수정·보충되어 비로소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이라는 이론적 체계로 정립되게 된 것이다.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 관한 북한의 해설은 「식민지·반봉건적 사회 제도를 인민민주주의제도(사회주의)로 전환시키기 위한 이론」으로서 「① 식민지·반식민지·신생국을 혁명의 주 대상국으로 삼고 있고, ② 광범한 노동계급(인민)을 혁명 주도세력으로 하며, ③ 사회주의에 곧바로 가는 혁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제국주의를 구축하는 민족해방의 과업과 단계적 압제를 타도하는 계급해방의 이중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명」이라고 한다.

이러한 북한의 남한혁명논리는 현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구조를 「식민지·반봉건사회」로 규정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민족적 모순」과 「계급적 모순」을 혁명유발의 동인으로 본 것은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은 논리적 측면에서는 정상적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거치지 못한 후진국(식민지·반식민지)에서 공산주의들이 당장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할 수 없는 주·객관적 조건을 배경으로 「민족해방·계급해방」을 이행하려는 공산화 혁명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은 남한 내의 자체혁명을 가장하여 폭력 및 무력의 배합을 통해 적화혁명을 수행하려는 전략기도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남한혁명을 통한 적화통일전략을 도식하면 주한미군 철수→반공정권 타도→인민정권 수립→북한정권과의 합작 통일 순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혁명목표 달성을 위하여 혁명역량의 편성과 혁명타도 대상을 규정하고 허구적 논리를 대중에게 합리화시키면서 계급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그리고 혁명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전략적 방침으로 「혁명의 주력군 편성」(지하당 결성)과

「통일전선」을 형성하며 혁명의 동력을 만들고 각종 투쟁방법과 투쟁형태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은 폭력 내지 무력으로 대한민국정부를 전복시키고 인민정권(공산정권)을 수립하려는 전략체계로서 남한혁명의 지위는 「전조선 혁명」의 구성부분의 하나인 「남한 내 지역혁명」이고 적화통일과의 합수 관계는 적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거쳐야 할 전제조건을 비중을 차지하며 방법 면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강변하는 「정의의 전쟁」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은 「남한자체의 혁명」임을 표방한 북한 기치 하의 적화통일전략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2. 對南 戰術

공산주의혁명 이론에서의 전략·전술은 다같이 당의 강령을 실현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나, 전술이라는 것은 전략과는 달리 수집된 전략적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에 수행할 구체적인 행동방침, 투쟁형태와 투쟁방법 등의 총체를 말한다. 따라서 전술은 일정한 전략적 단계에서 여러 번 변화될 수 있으므로 전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으며, 전략에 복종되고 그에 의해서 자체의 목적과 내용 및 수행방도가 규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전술을 통해서만 전략적 과업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술변화를 규제하는 것으로는 조성된 혁명의 주·객관적 정세와 「반동계급의 반항」의 정도에 있으며 합법·비합법·폭력·비폭력·정치적·경제적 투쟁 등 수단에 있어 다양성, 신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가. 지하당의 조직

(1) 지하당의 필요성과 역할

북한의 대남혁명전술의 제 형태에 있어서 지하당 전술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하당은 남한혁명을 주도하는 「혁명의 정치적 참모부」 즉, 「마르크스 - 레닌주의 당」 「혁명주력군」을 편성하는 핵이다.

지하당전술을 중시하는 이유는 첫째, 공산주의자들의 혁명론의 시각에서 마르크스 - 레닌주의당 건설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제1차적 혁명과제로 제기하고 있는 이상선행공산주의자들의 이론을 교조주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북한 공산집단은 「남한혁명의 주력군」으로서 공산당 조직을 남한에 부식하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해방이후 북한의 대남적화혁명 경험이 지하당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6.25 남침 실패와 남한의 정치 변동시를 「결정적 시기」로 연결시키지 못한 핵심요인을 지하당의 부재에서 찾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한국의 정세와 전술적 필요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강력한 반공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대중의 반공의식 또한 체험을 통해 뿌리 깊이 박혀 있다. 이러한 공산주의의 불모지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추진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불구하고 공산화혁명의 거점이 되는 지하당을 구축해야만 하는 필연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남한혁명을 남한자체의 혁명으로 위장하기 위해서도 지하당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북한은 남한지역 내에 혁명기지를 연결하여야 하나 공산주의 활동이 불법화된 조직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을 「지하당」이라 호칭하는 것이다.

지하당의 전술적 지위는 「혁명의 주력군」편성 거점이며 혁명투쟁 전개의 시발점이 되는 「혁명의 투쟁적 고리」인 것이다. 즉, 북한의 시각에서 지하당은 「근로대중을 혁명투쟁으로 인도하는 노동계급의 전위부대이며 최고형태의 조직」인 것이다.

지하당의 역할은 남한 혁명의 전략·전술을 수립하고 혁명투쟁을 주도하는 것으로 주장하나 현 단계에서는 공작원을 남파시켜 지하당을 구축하겠다는 기도의 표현에 불과하고 남한 내에 지하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외에 날조·인식시키는 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전략적 목적을 취하려는 것이며, 무장간첩 내지 고정간첩을 중심으로 단선적인 것이거나 지하당을 구축했을 경우 이들을 통해 대남 파괴공작을 전개하겠다는 전술적 책략인 뿐이다.

따라서 북한의 현 지하당공작은 대남 혁명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이의 실현이 어려운 조건에 직면하여 한편으로는 지하거점 마련을 위한 간첩남파에 주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 내 실재하지도 않는 「통혁당」조직을 날조하여 이를 대남 선전에 이용하는 양면성을 띄고 있음이 특징이라 하겠다.

(2) 지하당 조직

북한의 「지하당 조직원칙」은 대체로 레닌의 당 조직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나, 한국의 현실조건을 고려하여 「당 건설과 활동을 철저히 비합법적으로 진행하며, 당을 전투적이고도 탄력성있게 꾸미며, 당의 영도적 역할을 높이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책으로서는 첫째, 「실천적 투쟁을 통하여 당 대열을 부단히 강화하며 투쟁 속에 단련되고 검열된 혁명적 핵심들로 질적으로 당을 꾸려야 한다」고 한다. 둘째,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과 혈연적 연계를 맺고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만 자기의 영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당 자체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하며, 셋째, 당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대중 조직사업을 강력히 전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 원칙 하에 북한은 「혁명적 군중단체」를 지하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보고 이를 중시하며 「대중을 교양하고 그들 속에서 우수한 혁명적 핵심들을 길러내는 정치적 학교」라는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군중단체가 지하당」을 보호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각종 대남 투쟁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① 대중적 조직, ② 계급적 조직, ③ 원칙상 합법적 조직 등 조직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조직원칙에 따라 북한이 남한 내부에 부식하려는 「혁명조직」의 유형은 계급별로는 「노동자단체, 농민단체, 청년단체, 지식인단체」이고 요소별로는 「정치단체, 경제단체, 학술단체, 관습적 조직」 등 다종다양하다. 특히 「기성단체」에 간첩세력을 침투시키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남한에서 적화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 노동당의 지령 하에 행동으로 혁명기운을 조성하고 이를 「결정적 시기」로 유도할 수 있는 남한 내의 「주도적 역량」이 절실하다는 관점에서 지하당 부식공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나. 통일전선 전술

(1) 통일전선 개념

통일전선전술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투쟁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며 상투적인 전술이다. 공산주의자들이 통일전선전술을 혁명투쟁에 실제로 적용한 것은 레닌이 소비에트정권수립 당시부터이며 이의 이론적 체계정립을 시도한 것은 코민테른 3차대회(1921. 7. 21.)에서 「전술에 관한 체제」가 채택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서 공산주의자들은 코민테른 제7차대회를 통해 통일전선 개념을 종래의 노동자통일전선론의 테두리를 벗어나 광범한 「반파쇼인민전선」으로 발전시키면서부터 현대의 통일전선에 대한 이론을 확립하게 되었다. 그후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혁명투쟁에는 비록 명칭은 상이하다 하더라도 예외없이 통일전선 전술을 기본투쟁형태로 삼아 왔다.

통일전선에 대한 레닌의 규정은 「너에게 3개의 적이 있거든 그 중 둘과 동맹하여 하나를 타도하고 나머지 둘 중 하나와 동맹하여 다른 하나를 타도하고 마지막 하나는 1대1로 대결하여 타도하라」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통일전선개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통일전선에 대한 북한의 정의는 「노동계급이 당의 영도 밑에 일정한 혁명계급에서 해당 혁명의 승리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여러 정당·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이 공동의 원수들을 반대하기 위하여 묶은 정치적 연합」이라고 한다.

통일전선전술은 공산주의자들이 지하당전술과 함께 전술개념이 아닌 전략의 문제로 다루기도 하며 혁명투쟁은 통일전선 형성을 겨냥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중시하고 있다. 그것은 공산혁명 자체가 계급투쟁적인 만큼 혁명의 주도세력인 노동계급이 혁명수행을 위해 다른 계급을 공산주의 테두리내로 끌어들이는 작업의 총체를 의미하는 통일전선이 공산화혁명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은 「통일」이라는 민족의 절대명제를 앞세워 남한 내의 각계 각층을 현혹시켜 주요 타격대상(반공정부)을 고립시킨 후 부차적으로 남한 내 각계각층세력과 감정적으로 제휴하여 「용공정권」을 일단 수립하여 그 정권과 북한정권과의 「합작」형식을 통해 적화통일의 이룩한 후에는 사회주의 「계속혁명」 추진에 방해가 되는 각계각층의 민주세력마저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산주의 특유의 통일전선전술은 「대중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선동의 기술이며 결정적인 혁명의 시기를 조성하기 위한 힘의 축적기술이며 퇴조기를 벗어나고 공산주의 혁명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일시적 타협의 기술」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북한이 통일전선전술은 통일전선책략의 맥락을 유지하면서 현 한반도 정세에 특수성에 편승하여 대남 혁명을 추진하려는 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통일전선 책략이 남한혁명을 추진하려는 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통일전선 책략이 남한혁명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비중은 지하당전술이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면 통일전선전술은 대중을 혁명투쟁에 동원하는 「혁명의 보조역량」을 육성하는데 둔 것으로서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는 남한혁명수행의 이대지주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공산주의의 통일전선 명칭은 시기와 상황변화에 따라 「인민전선」, 「반제통일전선」, 「민족해방전선」, 「조국통일전선」 등으로 다양하게 바꾸면서도 공산주의자들의 의도와 목적에는 변화를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북한도 통일전선의 구호를 시기에 따라 「민족통일전선」,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반미구국 통일전선」, 「민족대통일 전선」, 「반미자주화통일전선」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하나 대남 적화혁명목표 실현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2) 통일전선 전술방침

북한은 통일전선전술은 「동맹자 쟁취문제인 동시에 반혁명에 대한 혁명역량의 우세를 보장하기 위한 당의 전략·전술적 문제」로 규정하고 「혁명의 승패는 결국 누가 대중을 더 많이 쟁취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관점에서 통일전선을 중요시하고 있다. 대중획득을 위한 통일전선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북한은 「① 군중쟁취에 의한 반혁명세력의 고립, ② 혁명의 주력군에 대한 적의 공격약화, ③ 혁명역량의 보호 및 확대강화, ④ 혁명의 주력군 보조」등 네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전선 공작원칙으로서 「①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여 노농동맹을 강화하고, ② 계급노선 원칙에서 적·아를 엄격히 구별하며, ③ 동요계층에 대해서는 단결하면서 투쟁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작원칙은 「단결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의 단결」 즉, 혁명투쟁에 이용할 수만

있다면 「노동자·농민·청년학생·인텔리·도시 부르조아지·민족자본가」 등 모든 계층을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뜻하며 「정당·정파·개별적 인사」는 물론 「보수정당 안의 일체 반미, 민족적 요소들과도 통일전선을 실현 하겠다」는 기도의 표현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내의 모든 계층을 통일전선 대상으로 내세우면서도 그것은 「혁명」이라는 목적과 「계급원칙」이라는 본질적 공산주의 속성에 기여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북한의 회유, 설득, 협박공작에도 불구하고 그들 노선에 동조하지 않는 「동요분자」에 대해서는 그가 아무리 이용가치가 높다 해도 통일전선 대상에서 갑자기 「타도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며, 명백한 「타도의 대상」도 정세상황과 필요에 따라서는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집요한 공작을 전개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통일전선원칙에 따라 통일전선공작을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전술방침은 첫째, 「각계각층 군중을 쟁취하기 위한 하층통일전선을 강화하며 이에 기초하여 상층 통일전선을 이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층통일전선이란 「행동통일을 위한 각계각층 군중과의 연합」을 의미하며 「상층통일전선」이란 「주로 정세의 진보적 인사들이나 중간층의 정당, 사회단체의 지도성원들과의 연합」을 의미한다. 둘째,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을 점차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 발전시키며 부분적인 연합을 전면적인 연합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대중이 의식화되지 못한 초기에는 「반정부」구호와 같은 일반적 투쟁형태와 소규모의 점조직별, 단체별 규합을 추구하되 혁명의식이 확산될 때에는 「반미구국」, 「합작통일」과 같은 감추어진 본질적 혁명구호를 공공연히 앞세워 전국적 규모의 폭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전술원칙이다. 셋째, 「통일전선체내에서 중간층, 민족자본가들과 단결하는 동시에 투쟁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3) 통일 전선대상

북한은 남한혁명의 「보조역량」을 「청년학생, 인텔리, 도시소자산계급, 양심적 민족자본가, 민족적 양심을 가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개별적 인사, 애국적 군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들 대상 중 청년학생과 지식층을 중시하고 포섭의 제1차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들은 「① 민족적 압박과 천시로부터 생기는 혁명성, ② 시대적 추세에 민감하고 민족적 각성이 빠르며, ③ 선진사상의 전파자로서 노동자, 농민과 혁명운동사이에 교량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다. 혁명투쟁전술

(1) 대중투쟁전술

공산주의자들의 혁명투쟁 양태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와 정치, 전쟁과 평화를 마치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이 보는 그들은 혁명을 위해서는 가능한 투쟁방법을 총동원하며 결코 금기를 설정하지 않는다. 「오직 투쟁만이 혁명을 성숙시키는 가장 적극적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끊임없는 투쟁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투쟁형태의 합법성과 폭력성 여부에는 구애받음이 없이 투쟁결과만을 중시하고 있다.

대중투쟁의 역할은 ① 대중의 의식화(용공화), ② 조직화(지하당)과정을 촉진시키며, ③ 모든 계급 계층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묶는데(통일전선 형성)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2) 선동전술

공산주의자들은 각종 미디어의 발달에 편승하여 심리전을 상대방을 현혹시키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선전」을 「일정한 사상, 이론, 정책, 지식, 사실 등을 대중에게 널리 해석하고 인식시키며 교양하는 일」이라고 하고 「선동」은 「혁명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에게 호소하고 대중의 기세를 돋구어 그들을 당정책관철로 동원하고 고무 충동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선전과 선동이 「공산주의자의 인간개선」과 「혁명투쟁을 양양시키는 정치적 도구」일뿐 이에 반하는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레닌이 그의 논문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선전, 선동을 공산주의 부식확장의 최우선적 수단으로 간주한 것처럼 북한 역시 이들 남한혁명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무기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선전선동전술은 현 시점에서 대남혁명 추진의 가장 기본적인 간접 침략수단으로 되고 있으며, 선전선동전술을 구사함에

있어 「적절한 투쟁구호 선정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호란 특정의 주장을 대중 속에 침투시켜 주의를 끌 수 있도록 간결한 말로 된 표어를 말하는데 공산당에 있어서의 「투쟁구호」는 투쟁방향을 암시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투쟁구호 선정기준에 관하여 북한은 「투쟁구호 작성원칙」으로서 「① 대중을 투쟁으로 조직동원 할 수 있는 호소성이 강하고 전투적인 투쟁구호, ② 조성된 국내의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는 구호, ③ 군중의 요구와 의식수준에 맞는 정확한 투쟁구호」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투쟁구호를 제시할 때의 원칙으로서 ① 혁명단체의 발전에 맞게 전략적 구호와 전술적 요구를 정확히 결합시키고, ② 투쟁형태와 방법에 따라 경제적 구호와 정치적 구호를 옹계 결합시키며, ③ 민족적 구호와 계급적 구호를 옹계 결합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원칙들은 「혁명투쟁이 낮은 단계에서부터 점차 높은 단계로 발전한다」는 관점에서 투쟁의 정도와 성숙단계에 따라 투쟁구호를 적절히 배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의 대남투쟁구호의 변용사태를 보면 「반제·반봉건혁명」노선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 바뀌었고(전략구호의 변화), 「반미구국통일전선」구호가 「민족통일전선」(전술구호의 변화)로 「민주연합정권」(계급구호)가 「반미자주화」(민족적 구호) 바뀐 것 등이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전술은 한 국민의 반공의식 저해와 국론분열 획책을 통해 혁명정세를 비약시키려는 「용공의식화」 공작의 보이지 않는 침략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가) 정치·경제투쟁배합전술

북한은 대남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방식의 하나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적절히 배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투쟁이라 함은 정치적 자유의 요구 또는 사회·정치제도를 변경시킬 목적으로 벌이는 투쟁을 말한다. 이것은 공산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투쟁형태 가운데에서 최고형태인 동시에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투쟁형태로 간주되고 있다.

정치적 투쟁은 대개 첫 단계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등의 정치적 자유라든가 정치적 요구의 투쟁구호를 내세우고 집회, 시위로서 그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는 합리적 투쟁을 전개하여 군중의 호응을 얻으며 군중을 투쟁 조직화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계급투쟁의 구호로 질적 전환을 꾀하면서 정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비합법적 폭력봉기사태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투쟁은 결국 정치투쟁, 폭력투쟁으로 귀결된다.

경제투쟁의 주요형태로는 진정, 교섭, 농성, 경제적 파업, 태업 등이 있으며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자유세계의 노조운동이다.

북한은 「경제투쟁에서부터 정치적투쟁으로」, 「자연발생적 형태로부터 조직적 투쟁형태」로의 질적 변화를 목표로 대남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있는 바, 경제적 투쟁은 정치투쟁의 시발점이며 노사분규의 조장은 경제투쟁의 핵심부분이 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배합투쟁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 합법·반합법·비합법투쟁배합전술

이 형태는 정치·경제투쟁 등의 세 형태를 적법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합법투쟁은 정부의 질서와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투쟁으로서 대체로 정치, 사회적 안정세 또는 지하세력이 미약할 경우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합법투쟁은 「법률적 합법」과 「사회적 합법」으로 구분되며 비교적 장기적으로 암약하는 간첩들이 국내인을 가장하여 전개하는 수법이다.

「법률적 합법투쟁」은 신분증명서 등을 획득한 조건에서 법의 테두리를 교묘히 지켜가면서 투쟁하는 방법이며, 「사회적 합법투쟁」은 주위 사람들로 부터 완전히 선량한 국민으로 인정받게 하여 혁명활동을 전개하는 투쟁방법이다.

북한의 합법투쟁 전개사례를 ① 노동법을 이용하여 노동운동을 확대시키려는 방법, ② 국회의원을 포섭하여 의회투쟁을 벌이는 방법, ③ 용공분자 또는 공산당에 포섭된 자를 국회에 진출시키는 선거운동을 벌이는 방법, ④ 학생운동을 이용하는 방법, ⑤ 합법적 간행물 이용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합법투쟁」은 공개활동을 전개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대중결속」과 「정치적 각성」에 주효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적극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투쟁으로서의 여건

조성을 위한 초보단계투쟁이라는 제한성을 부여하고 있다.

「비합법투쟁」은 지하당조직에 의해 지도되며 이 투쟁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각종 비밀조직이 결성되고 비밀인쇄공장이 조직되는 것이 상례이다. 북한에 의해 자행되는 지하당공작과 간첩 점조직에 의한 지하활동, 유언비어 날조 및 불은 전단살포행위 등은 여기에 해당된다.

「반합법투쟁」은 형식상으로 합법을 가장하나 실질적으로는 비합법적인 활동 방식이다. 즉,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사회관습적 측면에서 용인되어 온 제반 관례에 편승하려는 책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반합법 투쟁은 각계각층 인물들과의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수법이다.

(다) 폭력·비폭력투쟁배합전술

이것은 혁명투쟁 전술형태를 투쟁성격과 방법면에서 구분한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폭력만능주의에 입각하여 체제전복의 기본적·본질적 수단을 유혈폭력에서 찾으려 한다. 마르크스는 「폭력은 새로운 사회를 산출하는 산파」라 했고, 레닌은 「피압박계급의 해방은 폭력혁명없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모택동은 「정권은 총구로부터 탄생한다」고 하였고, 코민테른 강령에서는 폭력 투쟁과정을 「파업과 데모의 결합→파업과 무장시위→총파업과 무장봉기→국내전→정부전복」순으로 도식화하였다.

북한은 폭력투쟁을 「특수한 형태의 정치투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정권탈취를 위한 「가장 혁명적인 방법」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관은 폭력투쟁이 테러, 파괴, 방화, 폭동, 유격전을 비롯한 무장투쟁과 전쟁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비폭력투쟁」은 폭력투쟁 이외의 모든 형태의 「대중투쟁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중을 혁명투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각성」과 「조직화과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정치·경제투쟁, 합법·비합법투쟁, 대·소규모투쟁 등 모든 투쟁전술에 적용되고 있다. 군사작전상의 배합전술이란 북한군의 제약점을 매우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원리는 공산주의자들의 모략적 이론 바로 그것이다. 그 특성을 살펴보면 정규전의 집권화 지휘와 비 정규전의 분권화 지휘를 배합하고 전략적 집권화에 전술적 분권지휘를 도모하여 정면과

중심에서 여러 개의 전선을 형성하고 중심 지역 내의 전선은 기만적이고 기습적으로 형성하여 적 전투력을 분산 또는 견제시킴으로서 전 중심 지역을 동시 전장화를 도모하고 군사작전과 정치작전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략작전 개념에 따라서 북한은 일찍이 전략적 모략전부대로서 특수 8군단을 대 부대급 전술(작전단위)부대로서 경 보병여단을, 그리고 중·소 부대급 모략전부대로서 경 보병대대, 독립정찰대, 소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의 124군부대와 제17정찰여단을 근간으로 하여 대규모로 개편되었으며, 주기능은 정규군과의 전략적 배합작전을 시도하면서 비정규전 및 전략적 모략정찰을 감행하여 유사시 전국토를 전투지대화하는 것이며, 이에 따르는 임무로서는 제2전선 형성, 예비군 조기사용 강제, 후방사단 전방 증원 견제, 예비군 동원 방해, 주요 군사·산업·행정관서 등의 습격과 통신 및 병참선 차단으로 후방을 교란하고 민심을 공포 상태로 몰아 넣는데 있는 것이다.

第6節 防諜工作

1. 定義

간첩, 정보사범 및 기타 관련자와의 배후조직을 색출, 검거하기 위해 인지 하거나 수집한 첩보, 첩포 또는 자수한 간첩을 활용 또는 역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공작활동을 말한다.

2. 工作對象(目標)

가. 간첩

(1) 고정간첩

- (가) 6.25당시 월북자, 행불자 등 연고자
- (나) 6.25당시 전사자, 실종자 연고자
- (다) 남북귀환 어부 및 미귀환 어부 연고자

(라) 기타 신원특이 자, 장기출타자

(2) 우회침투 간첩

- (가) 재일 조총련 및 민단 전향자(위장)
- (나) 재일 조총련 모국 방문자 및 동 연고자
- (다) 국내 유학생(일본인, 재일교포, 특정국가 사람)
- (라) 해외 취업자(연예활동 등 구실)
- (리) 밀항 도일자(강송자, 자비 송환자)
- (마) 외항 선원(특히 무단이선, 탈선자)
- (바) 해외 유학자, 취업자(특히 동시 수교국)
- (사) 해외 빈번 여행자(특히 일본, 홍콩,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및 특정국가)
- (아) 북미 중미, 남미 등 미주지역 교포 및 서독 유학생
- (자) 중국 등 특정국가 교포

(3) 기타 대상

- (가) 미전향 좌익수 출소자(소재불명, 연고자)
- (나) 불순연동자, 시국불만자
- (다) 거동수상자
- (라) 기타 대공 용의자

나. 좌익사범

- (1) 자유민주주의 부정, 사회주의 찬양자
- (2) 노동현장 위장침투자
- (3) 노학연대투쟁 선동자
- (4) 민중혁명 선동
- (5) 주체사상연구 및 전파
- (6) 반미, 독재정권 퇴진운동
- (7) 야학 등 집단의식화 교육
- (8) 불온유인물 제작, 배포
- (9) 각종 사회혼란 초래 및 집회, 시위 활동

3. 申告對象

가. 간첩 식별요령

- (1) 20~30대 청년으로 직업과 용모에 어울리지 않게 휴대폰·자판기·버스카드 등 이용시 사용법이 서툴고 주의를 유난히 의식하는 사람
- (2) 월북자, 재부가족의 사진, 편지 등 안부를 은밀히 전해주는 사람
- (3) 해외거주자에게 서신, 서류, 책자 등을 은밀히 전해줄 것을 부탁하는 사람 또는 이런 서신(은서) 등을 소지 전달하는 사람
- (4) 국내 빈번 출입 중·러 교포로서 은밀히 이산가족의 서신연락 또는 상봉을 주선하며 접근해 오는 사람
- (5) 무연고자로 장기 출타가 잦고 자기신분을 감추려 하는 사람
- (6) 해외연수, 상사원 등으로 해외 장기체류 후 귀국한 자로서 북한선전 언동 등 거동이 수상한 사람
- (7) 뚜렷한 목적없이 해외여행을 자주하는 월북, 북송 가족이 있는 사람
- (8) 여권을 위조하여 모국 유학생이나 국내 빈번 출입 교포로서 남북한을 비교, 은연 중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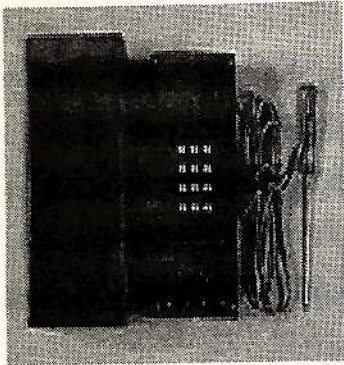


01, 02 // 취리히 공항과 타쉬켄트 공항 적발, 전체가 위조된 우리 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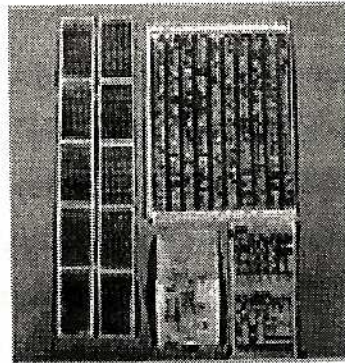
전체가 위조된 대한민국 여권

- (9) 군사, 주요 공장시설, 공·항만 등을 촬영하거나 경비실태를 탐문하는 사람
- (10) 나무 밑 묘지부근 등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물건을 묻는 사람
- (11) 무전기, 권총 등 간첩장비를 소지하거나 은닉하고 있는 사람
- (12) 무심결에 북한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예 : 화장실→위생실, 장교→군관, 경찰관→안전원, 채소→남새, 냉장고→냉동고, 주민등록증→공민증 등)
- (13) 북한을 찬양하며 함께 통일사업이나 대북교류 사업을 하자고 제의해 오는 사람
- (14) 자기 사무실이나 집에 전화·PC·FAX 등이 있음에도 주로 인터넷 PC방·호텔 FAX·공중전화 등을 이용하여 외국과 통신하는 사람
- (15) 북한방송·북한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을 수시 청취·열람하는 사람
- (16) 외국인 신분으로 입국했음에도 우리말을 능숙히 구사하는 등 국적 위장협회가 있는 사람
- (17) 위조 또는 타인명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거나 발급받고자 기도하는 사람
- (18) 한꺼번에 100달러짜리 고액권으로 수천, 수만달러를 암달러상에게 환전하는 사람
- (19) PC방 등지의 외진구석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순내용을 게재·전파하고, PC작업 후 황급히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
- (20) 특별한 직업없이 여관, 고시원, 독서실, 하숙집, 관광지 등에 장기 투숙하면서 외부와 연락이 없고 주인이나 종업원과 대화를 꺼리는 사람
- (21) 권총, 무전기, 난수표, 통신제원표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

01



02



01 // 무전기(단파송신기)
02 // 통신제원표 및 난수표

간첩장비(무전기, 통신제원표, 난수표)

나. 좌익사범 식별요령

- (1)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주장하는 사람
- (2) 김일성 주체사상 등 북한의 이념, 체제,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사람
- (3) 계급의식을 고취하며 민중혁명을 선동하는 사람
- (4) 노사간의 계급의식을 조장, 폭력투쟁을 선동하는 사람
- (5) 노학연대를 주장하며 폭력, 노사분규를 조장하는 사람
- (6) 북한의 통일노선 및 주체사상을 찬양, 선전하는 사람
- (7)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 반외세를 주장하며 폭력투쟁을 선동하는 사람
- (8) 공산주의 사상학습 지도 등 불순모임을 주동하는 사람
- (9) 북한찬양 서적이나 유인물을 상습적으로 제작, 배포하는 사람
- (10) 기타 각종 불순집회, 시위 등 사회혼란을 선동하는 사람
- (11) 인터넷상 불순카페를 개설하여 공산주의 사상학습 등 불순모임을 주동하거나 북한체제 찬양문건을 게재하는 사람

좌익사범의 활동 특징

- 과도한 휘발유·신나 및 화약류를 구입, 화염병·폭발물 제작, 소지
-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방송을 은밀 청취
- 위장취업하여 의식화 교육을 하며 노사분규를 조장
- 야학 등을 개설, 집단 의식화 교육
- 불온유인물을 제작, 소지하거나 다중이용 장소에 유키
- 타인명의의 자취, 하숙 및 빈번한 주거이동
- 부모, 친척의 왕래없이 젊은 계층의 출입이 빈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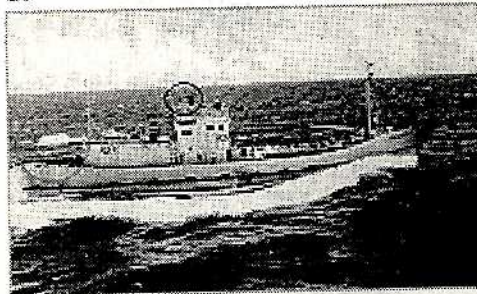
다. 간첩선 식별요령



공작모선 43)

- (1) 공작모선은 간첩호송을 전담하는 무장선박(통상 60~80톤급)으로 유달리
속력(35~40노트)이 빠르고 선미 내에 해안침투용 반잠수정(공작자선,
통상 5~10톤)을 탑재하고 있음.44)
- (2) 공작모선은 침투해안과 근접한 공해 상에서 공작자선을 분리하여 침투
시킨 후 자선이 복귀할 때까지 공해 상에서 정박 대기함.45)
- (3) 반잠수정 등 공작자선과 침투장비를 은닉하기 위해 선미 부분을 높게
제작하여 일반어선과는 달리 선수와 선미의 수상높이가 거의 같아
보이며 선미에 절개한 흔적이 나타나기도 함(선미의 원표시 부분).
- (4) 공작모선은 선명과 부합되는 국가의 깃발을 게양하며, 선교 및 선수
양현에 부착한 선박명과 등록표기는 쉽게 떼고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음.

01



01 // '98. 8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발견된
공작모선으로 보이는 외아선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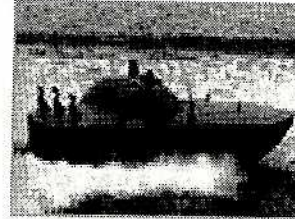
- (5) 선박명을 크게 표기하고 선교 전후 부분에 선박명을 표기하지 않고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구멍부이 등으로 은폐하고 있음.
- (6) 야간 항해 중에는 무점등으로 항해하다가 레이더로 타선박 발견시
항해등을 켜고 운항

43) 공작모선이란 해안침투용 반잠수정을 탑재할 수 있는 대형 간첩선을 말한다.
44) 선박이 200~250톤으로 길이가 40m가량 되는 대형 공작모선도 있음.
45) 통상 서해 상에서는 한국·중국어선으로 위장하고, 동해 상에서는 한국·일본어선으로 위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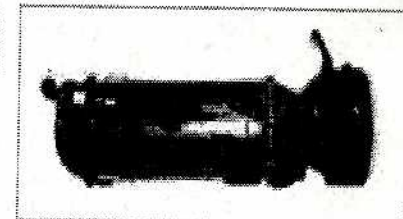
공작자선(반잠수정) 46)

- (1) 반잠수정은 통상 우리측 레이더 및 탐조등에 발견되지 않도록 해안
가까운 지점에서 반잠수 또는 잠수하여 운항하며 수중추진기(스쿠터)를
이용하거나 수영으로 해안에 상륙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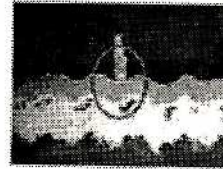
01 // 반잠수정
02 // 수중추진기

반잠수정과 수중추진기

잠수함(정) 47)

- (1) 잠수함은 수중 항해시 우리 어선의 어군 탐지기에 고래와 같은 형태의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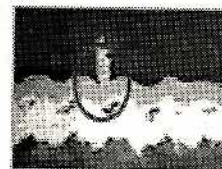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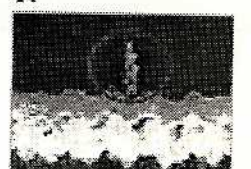
02



0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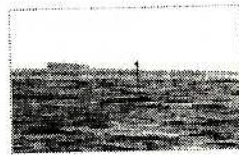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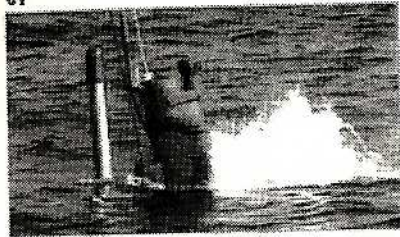
(잠수함(정)이 어군탐지기에 포착된 장면)

01 // 해저에 착저한 장면
02 // 착저 후 이동하는 장면
03 // 잠수함이 어군사이에 있는 장면
04 // 잠수함이 압초사이로 이동하는 장면

46) 반잠수정이란 공작모선에 탑재된 소형 간첩선으로 과거에는 소형어선이나 낚시배 등으로 가
장하였으나, 최근에는 주로 반잠수함을 이용하고 있으며, 북한과 인접한 동·서해 해역은 야
간에 공작모선 없이 반잠수정이나 소형 쾌속선으로 단독 침투가능하다.
47) '96. 10 강릉침투 무장공비 이광수는 "북한이 잠수함을 이용하여 수중침투를 시도할 때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남한 어선의 어군탐지기" 라고 진술

- (2) 잠수함은 수면상 수직으로 세워진 막대기 모양의 물체가 이동하면서 하얀 물보라를 발생시키기도 함(스노클항해).

01



01 // 스노클항해

- (3) 해안정찰시에는 수면 위에 잠망경 및 CCTV카메라, 통신용 부이(양식 어망 설치지역), 안테나 등이 노출되기도 함.
- (4) 해안 접근 또는 이탈시에는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 조업 중인 어선단에 근접 항해하는 경우도 있음.

4. 申告償金

- 간 첩 선 신고 : 최고 1억 5000만원
- 간 첩 신고 : 최고 1억원
- 좌익사범 신고 : 최고 3000만원

第4章 保安狀況

第1節 對間諜 檢問檢索



5분 타격대 출동모습

1. 場所

- 가. 사찰, 암자, 동굴, 독립가옥
- 나.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소
- 다. 철도역, 버스정류장, 고속터미널
- 라. 해안에서 내륙을 통하는 도로

마. 접적지역에서 도심지로 통하는 길목

바. 온천, 관광지, 탄광촌, 공장지역, 빈민촌

사. 무허가 하숙촌, 노동자 합숙소

2. 對象

가. 신자를 가장 교회, 기도원, 사찰, 암자 등에 장기 체류자

나. 각종接客업소 종업원 중 신원 불심자

다. 복역 중인 죄인의 면회를 온 가족으로 가장, 교도소 부근 민가에 은거하는 용의자

라. 부흥회 등을 이용, 철야기도로 숙식하면서 종교인으로 가장하는 자

마. 하등 이유없이 독립가에 기거하며 독신가정주부로 행세하는 용의자

바. 신병을 이유로 온천 및 관광지 배회자

사. 지하철, 아파트, 기타 공사장 노동자로 기거자

아. 의류, 어물, 기타 행상을 가장하여 주막집을 전전하는 용의자

자. 무면허조산원, 이용사, 안마사

차. 인적이 드문 산길에서 중도 승차하는 자

카. 필요이상의 선심으로 신임을 얻으려는 자

3. 要領

가. 간첩이 은신, 잠복할 수 있는 용이장소에 대한 주기적 수색 실시

나. 수색실시 지역 및 장소 파악, 일제수색을 실시

다. 간첩 침투루트 '목'에 대한 보안형사 고정배치

라. 무월광기, 야간, 새벽 등 취약일·시간대에 중점 검문검색

마. 버스, 화물차, 자가용차 정밀검색

바. 목적이 불분명한 여행자 검문검색

사. 긴급조회를 통한 명의 도용, 가장 활동자 철저한 규명

아. 반드시 주민등록증 사진 확인 및 본인 주소지 거주 또는 출타여부 확인

4. 着眼點

가. 복장

- (1) 군 작업복에 통일화(훈련화)를 착용한 자
- (2) 아군복을 모조하였기 때문에 천의 울이 가늘지 못하고 투박한 것을 착용한 자
- (3) 군 작업복을 손질하지 않음으로써 남루한 자
- (4) 신사복이 구형이며 촌스럽고 어딘가 어색한 자
- (5) 옷이 많이 구겨지고 찢어지거나 바지가 이슬로 인해 젖은 자
- (6) 구두 뒷축이나 양복에 검불이 묻은 자
- (7) 내의가 일제이고 구두가 기성화로서 단조로운 디자인으로 된 것을 착용한 자

- (8) 이슬, 진흙, 갯벌흙에 묻거나 젖은 복장을 한 자
- (9) 하산하는 신사복 차림의 자

나. 용모

- (1) 머리가 길며 헝클어지고 두발이 뜨고 수염을 깎지 않은 자
- (2) 눈이 충혈된 자(밤 행군으로 인함)
- (3) 손, 팔뚝, 얼굴 등에 상처가 많이 있는 자
- (4) 손이 더럽고 손톱 밑에 흙이 낀 자
- (5) 신체에서 땀냄새 등 악취가 풍기는 자
- (6) 환자처럼 얼굴이 핏색한 자(배멀미)
- (7) 얼굴이 검게 탄 자

다. 언어

- (1) 대화 중 북한용어나 사투리를 쓰는 자(군관, 전사, 요해, 리발소, 호상간, 인민학교, 공민중, 기업소 등)
- (2) 당황, 흥분, 착오로 헛나오는 말을 취소하거나 얼버무리는 자
- (3) 화폐단위를 '환', '전'으로 호칭하는 자

라. 거동

- (1) 2~3명이 야간에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는 자
- (2) 군사기지 주변의 야산을 오르내리는 자
- (3) 아침 일찍 해변이나 산 속에서 나타나는 자
- (4) 산간 동굴 속을 드나드는 수상한 자나 인적없는 산중을 배회하는 자
- (5) 심야에 수상한 통행인이거나 또는 수상한 길이나 지명을 묻는 자
- (6) 몸에 권총, 무전기, 공작금 등을 휴대하여 보행에 불편이 뚜렷한 자
- (7) 사람을 보고 꺼려하거나 당황하는 자
- (8) 화폐가치를 잘 모르며 일용품 시가에 어두운 자
- (9) 상품의 명칭(특히 외국어)을 잘 모르며 거스름돈에 신경을 안쓰는 자
(거스름돈을 안 받거나 세어보지 않는 자)

- (10) 일용잡화가 아닌 물건을 구매 의뢰하는 자
- (11) 물건을 구매시 가격이상의 금액을 주거나 손님인 자기가 저자세인 자
- (12) 역, 대합실에서 밤늦게 기차를 기다리는 척 배회하거나 남의 시선을 피하는 자
- (13) 새벽에 인적드문 시골에서 버스를 타는 자
- (14) 하차시 검문여부를 살피고 원거리 동태에 민감한 자
- (15) 버스요금을 몰라 눈치를 보는 자
- (16) 교통시설 이용시 이용방법인 순서를 몰라 어리둥절 당황하는 자(승차 시에 타인의 언행을 두루 살피기만 하고 일체 개입치 않는 자)
- (17) 음식점에서 음식주문을 하고 무조건 선불하는 자
- (18) 극장, 다방, 음식점 등에서도 항상 가방을 들고 다니는 자
- (19) 이발소에서 행동이 미숙하거나 요금을 모르는 자
- (20) 여인숙, 여관에 투숙하여 임검에 신경을 쓰며 주인의 환심을 얻으려고 돈을 쓰는 자
- (21) 신기한 것처럼 주위를 살피는 자

마. 일상생활

- (1) 호감, 과잉친절을 베풀거나 금전적으로 접근하려는 자
- (2) 우리 나라 지리나 실정에 어둡거나 항간의 사건내용을 모르는 자
- (3) 은연 중 정부시책을 비방하거나 북한을 찬양하는 자
- (4) 외화, 순금을 소지하여 환금하려 하거나 출처 불명의 돈을 소지한 자
- (5)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또는 타인의 명의로 투고하거나 편지를 주고 받는 자
- (6) 해방 전 또는 6.25때 행방불명 되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자
- (7) 거처나 전혀 연락없던 친척이나 친구가 나타났을 때
- (8) 잦은 여행이나 목적이 석연치 않은 장기여행자
- (9) 자주 주거를 이동하는 자
- (10) 밤 12시 이후 방송을 레시바를 사용하여 청취하는 자

- (11) 밤 중에 파수를 보는 자나 정기적으로 야간외출자
- (12) 공원, 공중변소에 낙서하는 자
- (13) 대중이 집합하는데는 잘 가면서도 자기 집에 초대하지 않거나 꺼려하는 자

바. 휴대품

- (1) 고급카메라(망원렌즈 부착), 일제 필름을 휴대한 자
- (2) 중형 이상의 단파라디오를 소유한 자
- (3) 휴대품목 중 소중하게 서적 1권을 소유한 자(암호해독용)
- (4) 남자는 만년필 형태의 독침 또는 독총을 양복 윗주머니, 안주머니에 은닉
- (5) 자살용 독극물을 앞섶이나 소매깃에 비장
- (6) 천으로 된 암호문건을 팬티 속에 꿰메서 착용

第 2 節 保安狀況의 分析判斷

1. 保安狀況의 意義

간첩, 거동수상자, 간첩선, 의아선박, 간첩장비, 적성물품, 폭발물 발견, 중요 화재사건, 어선 및 민간인 납북어선 등 보안상 의혹이 있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의 상태를 말한다. 즉,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반상태를 말한다.

2. 保安狀況 處理의 重要性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으며, 보안상 용의점 유무를 모르기 때문에 보안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신속·정확하게 보고, 전파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정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즉, 보안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가. 상황기능에서는 신속정확한 보고 및 전파로 상황유지를 하고

나. 보안기능에서는 보안분석조가 신속히 현장에 출동, 보안용의점 유무를 판단하여 분석판단결과를 작전부대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며

다. 작전기능에서는 초동타격대 출동 대간첩작전을 실시하는 등 각 기능별로 신속·정확한 보고 및 전파가 안되고, 분석판단이 지체되거나 잘못되면 작전부대의 적전개시가 지체되고 간첩이 도주하여 사건 해결이 불가능해지거나, 사건의 해결에 막대한 인원, 예산이 소모되게 되는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3. 保安狀況의 類型

보안상황은 다양각이하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 간첩 출현

나. 거동수상자 출현

다. 간첩선, 의아선박 출현

라. 간첩장비, 적성물품 발견

마. 중요 폭발물, 총기 습득 및 피탈

바. 대형 화재발생 및 폭발물 폭발

사. 민간인, 공무원, 군인, 선박 납북 및 월북사건 발생

아. 선박유실 및 표류선박 발견

자. 북한 공중선전물(전단, 책자, 서보, 물품) 다량 발견

차. 용공불은 책자, 유인물, 벽보, 서신, 물품 발견

카. 불은행동 및 불은낙서 사건 발생

타. 기타 간첩의 소행으로 의심이 되는 사건

4. 初動措置

가. 최초 상황 접수시

(1) 신고내용의 신뢰성 검토

상황발생시 파출소 또는 경찰서 상황실 및 보안과에서 구두나 전화로 신고를 접수하게 된다. 이때 상황 접수자는 신고내용의 타당성, 앞뒤 내용의 모순점, 사회상식상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인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위신고, 장난전화, 과장신고, 정신이상자의 신고 등을 가려내어 인력, 예산, 시간, 장비 등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2) 신속, 정확한 보고 전파

상황을 접수한 후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있으면 즉시 상급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유관기관에 전파해 주어야 당해 기관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보안상황의 보고와 전파는 일반원칙인 ① 적시성(신속성), ② 정확성, ③ 간결성, ④ 보안성(기밀유지)을 지켜서 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보고 전파의 지속성 유지 : 상황이 발생하면 종결될 때까지 1, 2, 3 보고 등으로 상황전개에 따른 미비·의문점을 보충토록 하여 보고·전파를 일관성있게 하여야 한다.

(나) 미비점에 대해 보완 : 상황에 따라 미비점이 확인, 구비되어야 하며 보고(전파)되어야 할 사항은 1, 2, 3차 보고마다 미비사항을 명시하고 동사항의 조사 확인 및 조치내용을 기술하여 상황유지에 계속 정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단계별로 상황이 파악되는대로 즉보 : 상황보고는 신속성과 정확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단계별로 상황이 파악 되는대로 즉보하여야 한다.

(3) 현장보존 및 신고자 신병 확보

신고내용을 신속·정확히 보고 전파하는 한편 현장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나중에 보안분석조 또는 합동정보심문조가 현장에 도착 분석판단을 할 수 있다. 또한 대개의 경우 보안상황접수시 신고자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한 후 전화를 끊는데, 접수자는 반드시 신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분석판단시 정확한 내용을 신고자에게 물어볼 수 있다.

나. 현장출동시

상황발견 또는 신고접수시 분석요원과 보안책임간부의 신속한 출동은 상황 분석판단과 사건의 처리에 대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1) 차량, 통신장비 등 준비

(2) 현장에 대한 인적·물적·지리적 취약요소 등 예비지식 숙지(보안취약지 분석자료 활용)

(3) 정보분석장비, 기상분석표 등 휴대

<정보분석장비>

(가) 5만분의 1 작전지도

(나) 간첩장비편람

(다) 전등, 필기도구, 색연필 등

(라) 소형 삽, 금속탐지기

(마) 나침반, 분도기, 삼각자

(바) 족적 및 지문채취 도구

(사) 망원경, 확대경

(아) 줄자, 장갑, 로프줄

(자) 무기, 수갑

다. 현장도착시

(1) 현장으로부터 원거리 하차 현장접근

주변에서 감지되지 않도록 멀리서 하차하여 조심성 있게 현장에 접근하여야 한다.